

온천법령 질의 해석례

2021. 12.



I 민원 질의 해석례

1. 총 론	3
1-1.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념	3
1-2. 온천의 개발 절차	6
2. 온천의 굴착	9
2-1. 굴착허가	9
2-2. 굴착신고	11
3. 온천의 발견	12
3-1. 온천발견신고 수리 기준	12
3-2. 온천발견신고자 지위 승계	14
3-3.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15
4. 온천공보호구역	19
4-1. 온천공보호구역 지정·변경 절차	19
4-2. 온천공보호구역 해제	22
5. 온천개발계획	25
5-1. 온천개발계획 수립	25
5-2. 온천개발계획 변경	32
5-3. 온천개발계획 시행	35
5-4. 온천개발계획 취소	36
5-5. 온천원보호지구 지정·해제	37
6. 온천의 이용	39
6-1. 온천이용허가	39
6-2. 일시이용허가 및 이용 제한	44
6-3. 보양온천 지정	45

Contents

7. 온천의 보전·관리	47
7-1. 수질검사	47
7-2. 온천 보전	48
7-3. 온천종사자 교육	51
7-4. 과태료	52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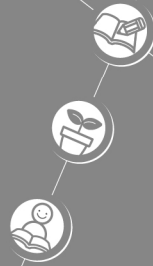
법제처 해석례

1. 온천원보호지구이 아닌 지역의 온천이용허가(17-0136)	55
2. 온천발견신고 취소와 온천원보호지구 해제와의 관계(16-0565)	59
3. 온천개발계획 승인 적용 법률(16-0444)	63
4. 온천개발계획 취소된 경우 의제처리한 결정의 실효(14-0141)	68
4. 온천법 부칙 4조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의 의미(10-0199)	71
5. 일시온천이용허가의 양도(08-0437)	74
6. 온천우선이용권자 여부(08-0430)	77
7. 토지의 굴착허가 대상(08-0253)	80
8. 온천우선이용권자 여부(08-0041)	86
9. 온천우선이용권자 여부(07-0364)	90
10. 업종오인용어의 사용(06-0344)	92
11. 온천발견자의 지위(05-100)	94

Ⅲ

온천법령

1.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99
2.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25
3.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233



Part



민원 질의 해석례

1 총론

1-1.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념

■ 질의 요지

- 1990년 토지소유자가 아닌 ‘온천발견신고자’로부터 관련 권리를 이전받은 자가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 여부

■ 회신 내용

- 최초 온천발견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받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관련 권리를 이전받은 자는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해석례(08-0041), 대법원 판례(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해석례 08-0041(2008.5.9.)

질의요지

- 온천공 소재 토지 소유자가 최초 온천발견 신고를 한 신고인으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 받으면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회 답

- 최초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 받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온천공 소재 토지 소유자는 최초 온천발견 신고인의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없으므로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질의 요지

- 온천발견신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 존재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2조제2호는 온천우선이용권자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초 온천발견신고인이 토지소유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제처 해석례 07-0364 참고)

■ 법제처 해석례 07-0364(2007.11.21.)

질의요지

- 「온천법」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 소유권자로부터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토지를 이전받은 소유권자는 위 규정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인지?

회 답

-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토지를 이전받은 소유권자는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닙니다.

■ 질의 요지

- 온천공이 소재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 변경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발견신고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등으로 이전 받을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도 이전된다고 판단됩니다.

■ 법제처 해석례 08-0430(2009.3.5.)

질의요지

- 토지 소유자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온천법”이라 함) 시행 전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토지의 현재 소유자가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회 답

- 토지 소유자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토지의 현재 소유자도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질의 요지

- 신탁에 의한 등기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 변경 여부

■ 회신 내용

- 고유재산과 달리 신탁 등기에 따른 신탁재산이 권리·의무관계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변경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대법원은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소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관리관계를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5262 판결, 법제처 09-0329 해석례 참조)

1-2. 온천의 개발 절차

■ 질의 요지

-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없는 경우, 온천개발계획 수립 등 개발 절차 진행 방법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5조 및 제10조는 시장·군수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온천개발계획 수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주민의견 청취, 온천 개발·이용 가치 검토 등을 통해 온천개발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신고수리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현행 온천법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2017년 온천업무편람에 따라 ‘차순위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인정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개정(2001. 1. 26. 개정)의 입법 취지는 온천 개발을 둘러싼 이권 분쟁과 무질서한 온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범위는 법령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온천발전신고 수리인이 아닌 온천공 소재 토지소유자에게 온천우선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차순위 온천우선이용권자’)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제처 해석례 08-0253 참조)

- 온천법 제10조제1항은 시장·군수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온천관계자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군수가 직접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법제처 해석례 08-0283(2008.10.15.)

질의요지

- 가. 2001. 1. 26. 법률 제6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온천법」(이하 “구 온천법”이라 함)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신고 수리된 해당 온천공이 속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 나. 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해당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수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이후 신고 수리된 해당 온천공이 속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 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굴착하고자 하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거나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해당 온천발견 신고인은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수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온천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천의 굴착

2-1. 굴착허가

■ 질의 요지

- 온천공 굴착 거리제한(1km) 규정에 대한 예외 적용 범위
- 주변에 타인의 온천공이 존재할 경우, 보조공 굴착허가 허용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2조제4항제3호가목은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에는 굴착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거리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사유로 보조공 굴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온천공간 거리제한의 취지는 온천원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조공 굴착에 대한 거리제한 예외는 온천법 제23조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보조공을 굴착하는 경우, 주변에 타인소유 온천공이 없는 경우 등 분쟁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공 굴착에 대한 거리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보조공 굴착에 대한 거리제한 예외를 1km 이내에 타인소유 온천공이 존재하여 주변 온천공 소유자와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굴착허가 제한사유(온천법 제12조제4항3호가목)인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가 1km이내인 경우'에서 기존 온천공에 발견신고공, 보조공 포함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2조제4항제3호가목의 거리제한 규정은 기존 온천의 보호, 온천을 둘러싼 분쟁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존 온천공'에 '발견신고공' 이외의 '보조공'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온천원보호지구내 타인소유 온천공 존재시 보조공 굴착 허용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2조제4항제3호가목은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에는 굴착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보조공 굴착은 거리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온천공간 거리제한의 취지는 온천원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보조공에 대한 거리제한 예외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보조공 굴착허가와 관련하여 수평거리 1km이내에 타인소유 온천공이 존재할 경우까지 굴착허가를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온천법 제15조는 온천보호를 위해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지하수 개발, 기타 토지 굴착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온천법 제23조는 온천우선 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토지 굴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질의 요지

- 굴착허가에 대한 거리제한 기준(굴착토지 전체, 굴착지점)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2조제4항제3호가목은 굴착하려는 토지가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 굴착허가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온천법 제22조제1항제1호가 온천발견신고 수리 제한사유를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온천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굴착하려는 토지는 굴착지점(온천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 참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 굴착신고

■ 질의 요지

- 기존 온천공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지점(1,012m)에서의 온천굴착신고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 온천 굴착신고 수리 여부

■ 회신 내용

- 기존 온천공과 온천굴착신고 온천공의 이격거리가 약 1km에 불과하여 향후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가능 여부, 기존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영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요지

- 지하수 개발중에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도 온천 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2조제5항 및 온천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은 온천발견신고 서류에 온천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은 지하수개발을 통한 편법적인 온천굴착을 방지하고 온천굴착 허가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온천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은 보조공 굴착 등의 경우에는 온천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온천의 발견

3-1. 온천발견신고 수리 기준

■ 질의 요지

- 신규 온천공과 지하수공의 수위 영향정도가 2% 이상인 경우, 온천발견신고 수리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시행규칙 제13조는 온천발견신고 수리와 관련하여 온천의 개발·이용의 가치 유무를 판단하는데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 유무는 원칙적으로 온천 전문검사기관의 온천공영향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참고로, 온천업무편람(p.35)은 인근 온천공, 지하수공과의 수위 영향정도가 2%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수리가 불가하고 원상회복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일인 소유인 경우에는 제외), 온천업무편람(p.144)은 주변공과의 영향을 제거하여 “일일 적정양수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질의 요지

-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제한사유(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인 ‘온천원이 같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판단기준

■ 회신 내용

- 온천법시행규칙 제13조제5항 ‘온천원이 같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기존의 인근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에 실질적 장애를 줄수 있는 지역으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등에 의하여 그 상호관계와 영향 등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증명된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두20734 판결 참조)

■ 질의 요지

-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보전산지에 해당할 경우 온천발견신고 수리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22조제1항제2호 및 온천법 제12조제4항제3호나목은 온천공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온천굴착허가 및 온천발견신고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군수는 보전산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온천굴착허가 및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시장·군수는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가 보전산지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므로 위 사건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추진상황, 산지전용허가 완료 여부, 주변 보전산지 보호 가치, 조건부 신고수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온천발견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온천전문검사지침에서 온천공 검사시 지하수위가 해수면보다 낮을 경우에는 기준수위를 해수면으로 변경하여 측정하는 이유

■ 회신 내용

- 온천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은 일일 적정 양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수에 따른 수위강하 범위는 48시간 동안 양수하였을 경우 기준수위로 부터 100m 이내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과 관련하여 온천전문검사지침(p.138)에서 기준수위가 해수면보다 낮을 경우에 대해 예외를 규정한 이유는 기준수위가 지표로부터 낮아진다는 것은 온천이 고갈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해수면보다 기준수위가 낮아질 경우 해수침투로 인한 온천수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2. 온천발견신고자 지위 승계

■ 질의 요지

-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 승계 인정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2조제2호에서는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만 토지 소유권자에게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닌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 20353 판결, 법제처 해석례 08-0041 참조)

■ 질의 요지

- 온천발견자에 대한 지위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 회신 내용

- 온천법 개정(2001. 1. 26. 개정)의 입법취지는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가 안정적이고 확실한 온천발견신고인에

한하여 온천 우선이용허가의 혜택을 부여하고, 온천 개발을 둘러싼 이권 분쟁과 무질서한 온천 개발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으로 온천발견자에 대한 지위 승계는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제처 해석례 08-0041 참조)

3-3.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 질의 요지

- 온천발견신고 수리 이후 지적 측량으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 온천법 제21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가능 여부
 - *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지적 측량으로 온천공 토지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 변경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21조제4항제1호의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온천의 온도, 적정 양수량 등 온천발견신고 수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 여부, 귀책사유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온천발견신고 수리 이후 단순히 지적측량으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 온천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온천 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지적 측량으로 온천공 토지소유권자 변경이 있는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 변경 여부는 소송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토지 소유권자가 확정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온천발견신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온천발견신고 취소의 대상
- 온천발견신고자가 없는 경우 청문 대상 및 공청회 실시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발견신고에 대한 취소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의 주체인 온천발견신고자에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대법원은 온천을 발견한 자가 아니면서 온천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는 온천법상의 온천발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 온천발견신고자가 없는 경우 온천발견신고 취소에 대한 청문은 행정절차법 제2조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실시할 수 있으며,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처분의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에 의해 온천을 발견하였으나 온천발견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처리방법(기존 온천공과 1,000m 이내)

■ 회신 내용

- 지하수가 온천법에 따른 온천에 해당할 경우(25℃ 이상, 유해성분 미포함)에는 온천발견신고가 가능할 것이나, 온천법 제22조에 따른 발견신고 수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판례는 이 사건 토지가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공보호지구 내에 있지 아니하여 온천법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은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이므로, 온천법 제8조를 지하수법 제7조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동법 제10조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에도 지하수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으로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제8호에 따라 이 사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8구합3211 판결)

■ 질의 요지

- 온천발견신고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온천발견신고의 취소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2010. 8. 5일 시행) 부칙 3조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같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신청 등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온천법 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원칙적으로 취소(3년 이내 유예 가능)하여야 합니다.

■ 법제처 해석례 16-0565(2016.11.7.)

질의요지

- 구 「온천법」(2010. 2. 4.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이라 함)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함. 이하 같음)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지?

회 답

-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온천공보호구역

4-1. 온천공보호구역 지정·변경 절차

■ 질의 요지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5조 및 온천법시행규칙 제2조의2는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절차로 시장·군수 등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보·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온천공보호구역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며 주민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1.10월, 온천법 시행규칙 개정)

■ 질의 요지

- 타인의 발견신고공이 온천공보호구역 경계선에서 100m 근처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승인할 때에는 적정 양수량, 개발가능성 등에 비추어 소규모 온천개발에 적합한 지역인 여부, 토지의 용도 및 개발가능 부지의 면적, 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발견신고공이 온천공보호구역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등 온천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요지

- 온천공보호구역 면적을 축소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 필요 여부

■ 회신내용

- 온천법 제5조제1항은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 변경을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천공보호구역 면적 축소는 경미한 사항(전체면적의 10%이내 증감)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공보호구역의 토지 50%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 상실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법시행령 제5조의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시장·군수는 온천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발·이용할 가치 하락 등을 고려하여 온천공보호구역 해제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온천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기준으로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질의 요지

-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목욕장업 및 숙박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온천발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필요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 용도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하며, 온천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신청시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온천이 발견된 지역의 토지용도가 온천개발에 적합할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없이 목욕 및 숙박시설 설치계획을 소규모 온천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요지

- 온천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정기온천자원조사를 통해 일일 적정양수량 변경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업무편람(p.134)은 온천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정기온천자원조사가 아닌 온천자원평가조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온천자원평가조사에 포함된 온천공 검사 등을 통하여 일일 적정양수량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5조는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에서의 지하수 개발, 토지 굴착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온천공보호구역내 건축허가는 지하수 개발, 토지 굴착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온천이용시설 여부, 소규모 온천개발계획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4-2. 온천공보호구역 해제

■ 질의요지

- 2009년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을 현재 온천법을 적용하여 해제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온천법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 온천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정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온천법 제5조제3항제4호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에 건축물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포함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5조제3항제4호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단순히 건축법에 따른 착공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제처 해석례 15-0819 및 16-0517 참조)

- 온천법 제5조제3항제4호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는 온천법 제10조의 4(개발사업의 시행) 제3항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 여부, 실시계획 인가 여부, 전체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건축물 미착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참고로, 법제처 해석례(15-0819)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질의 요지

- 온천공보호구역을 해제할 경우, 온천법 제10조의2를 준용하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동시 해제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0조의2는 온천법 제10조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위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허가등 의제에 관한 규정으로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행정행위의 실효는 각각 행정행위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온천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 결정은 별도의 해제 결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해석례 14-0141)
- 따라서, 온천공보호구역의 해제 이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의 해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제처 해석례** 14-0141(2014.5.22.)

질의요지

-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유원지)에 관한 사항을 말함. 이하 같음]의 결정이 의제된 후,
- 시·도지사가 「온천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의제된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효력을 잃는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한지?

회 답

- 시·도지사가 「온천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의제된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유원지)에 관한 사항을 말함]의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온천개발계획

5-1. 온천개발계획 수립

■ 질의 요지

-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닌 자에 대한 온천개발계획 신청권 부여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0조제1항 단서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개발계획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닌 자에게 온천개발계획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제처(해석례 05-0100)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닌 자는 온천법령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인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온천법 제10조 및 온천법시행령 제7조제4항은 온천개발계획 수립 또는 승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닌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참조)

■ 법제처 해석례 05-0100(2005.12.28.)

질의요지

- 가. 「온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권자가 「동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온천발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굴착허가나 지하수 개발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권자가 당연히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토지소유권자는 「동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당해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동 신고인이 당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굴착허가 및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질의 요지

- 온천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온천공의 일일 적정양수량이 1천톤 미만일 경우, 최소 3개의 온천공 필요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는 온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온천전문검사는 온천공의 일일 적정양수량이 1천톤 미만인 경우, 최소 3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은 온천개발계획에 필요한 온천수의 안정적 확보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일일 적정양수량이 1천톤 미만인 온천개발계획은 최소 3개의 온천공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온천발전 신고공과 온천개발 예정지간 이격(1.8km)으로 송수관로를 통해 온천수를 공급하는 온천개발계획 승인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은 시장·군수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에서 30,000m²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온천개발계획을 수립(온천법 제10조제1항) 하도록 하고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 개발을 위해 기존 온천공으로부터 1km 이내의 온천 굴착허가 및 발전신고를 제한(온천법 제12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하고 있으며 온천개발면적도 적정 양수량에 따라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온천법 제11조)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온천법시행령 제7조제4항은 시·도지사가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적정 양수량, 효율적 시설배치, 주변환경과 적합성, 다른 지역개발 계획과의 관련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온천개발계획에 대한 수립·승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 개발 여부, 온천공 주변 지역 개발 여부, 적정양수량, 주변환경과의 적합성,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특히, 온천공으로부터 1km 이상 이격된 온천개발계획에 대하여 원거리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주민 편익,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재산권 피해 가능성, 주변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을 면밀하게 비교형량하여 수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온천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이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요지

- 온천개발계획에 전체 온천공에 대한 영향조사 결과 포함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온천법시행령 제6조는 온천개발계획에 기존 온천원 영향에 대한 온천전문검사보고서(적정양수량, 수위변동 등 포함)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온천업무편람(p.35)는 온천공영향조사의 범위를 수평거리 300m 수준에서 시장·군수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온천개발계획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적정거리 이내의 전체 온천공에 대한 영향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다만,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직접적인 영향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간접적인 영향조사(거리, 심도, 영향범위, 포획구간 등)를 통하여 영향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두20734 판결, 춘천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7구합632 판결 참조)

■ 질의 요지

- 온천법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에 따라 해당 법률(29개)에 대한 인·허가를 온천개발계획 승인에 모두 포함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제도에 따르지 않고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제처 해석례 20-0483 참조)

-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온천개발계획과의 관련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허가를 온천개발계획 인·허가 의제로 처리할 것인지, 개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관광진흥법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관광지개발계획 및 조성계획에 온천개발계획 의제 없이 온천이용계획만 포함하여 관광지개발계획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도 별도 온천개발계획 승인 여부

■ 회신 내용

-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8호는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시에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시에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위 사례와 같이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의제처리하지 않고 온천이용계획만을 관광지조성계획에 포함한 경우에는 온천법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2004년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후,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적용 법률

■ 회신 내용

- 2010년 이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 규정(법률 제9202호, 2008. 12. 26., 일부개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의 취지는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하도록 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10년 개정 온천법 시행 전 ‘이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해석례 16-0444 참조)
- 다만, 온천법 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 해석례 16-0444(2016.11.10.)

질의요지

-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된 이후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회 답

-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된 이후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해석례 10-0199(2010.7.20.)

질의요지

-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라 함)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상 온천발견 신고자가 온천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과 굴착허가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이 개정 「온천법」(법률 제10005호, 2010. 2. 4. 공포, 8. 5. 시행되는 것을 말함. 이하 “2010년 개정 「온천법」”이라 함) 부칙 제4조의 해석상 해당 온천지구의 지정 당시 시행되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 되는지?

회 답

-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상 온천발견 신고자가 온천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온천개발 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은,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으로서 2010년 개정 「온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법률 제7856호, 2006. 3. 3. 전부개정, 7. 1. 시행)과 그 이후 일부 개정된 규정이라 할 것이지, 해당 온천지구의 지정 당시 시행되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굴착허가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 경과조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질의 요지

- 온천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온천전문검사기관보고서 등 제출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0조제4항 및 온천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변경승인 신청서에 온천전문검사보고서 등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온천개발계획 변경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전 제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온천개발계획 수립할 경우, 개발면적 산정기준 준수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1조 및 온천법시행규칙 제6조는 일일적정양수량을 토대로 온천개발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천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은 원칙적으로 산정기준을 초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2. 온천개발계획 변경

■ 질의 요지

- 온천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경미한 사항 해당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0조제4항 및 온천법시행령 제9조제5항은 “온천개발 면적,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예정지구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전체 면적의 10% 범위에서 해당 면적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온천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온천업무편람(p.49)은 온천원보호지구 면적의 증감없이 온천이용시설, 온천의 채수·이용계획, 부대시설 증감 등 단순한 온천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 해당 여부는 온천수 이용허가량 등을 감안한 전체시설면적의 10%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장·군수 등은 온천개발 면적, 온천수 이용허가량 등의 변경 정도를 고려하고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과 협의하여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의 온천개발계획 변경신청 권한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제1호의 경우에 한정)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계획을 변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온천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신청 권한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온천개발계획 변경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할 경우 적용 법률(온천법에 따른 의제처리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0조의2제1항은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허가 의제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온천개발계획의 변경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개별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온천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경우, 온천전문검사보고서 첨부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시행령 제9조제3항은 온천우선이용권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온천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지리적 여건, 변경사유, 토지조서, 온천전문검사보고서, 경제성보고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장·군수 등이 온천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온천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온천개발계획의 변경사항이 온천자원의 변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최근의 온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온천전문검사보고서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과거의 온천전문검사보고서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온천법 제10조제7항은 시·도지사가 온천자원의 변동으로 온천개발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3. 온천개발계획 시행

■ 질의 요지

- 온천개발계획 승인 이전의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 승인조건(공공시설 설치 등) 미이행을 이유로 불허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개발계획 승인 이전의 건축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에 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건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온천법 제10조제3항은 해당 지역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 등에 맞게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요지

-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토지수용 재결신청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0조의4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등 수용·사용권과 협의 불성립에 따른 재결신청권을 시장·군수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토지수용 재결 신청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4. 온천개발계획 취소

■ 질의 요지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1994년) 이후 온천개발계획 미신청에 따른 지구 해제 가능 여부,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2차례 유예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21조제4항은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하며(2010. 8. 5. 시행),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2015. 10. 21. 시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온천개발계획 미신청 기간이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하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취소에 대한 1차 유예 이후 재유예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온천개발계획 승인 이후 사업착수 기한(2년), 유예기한(6개월) 이후 승인조건을 충족(산지복구비 예치)한 경우 온천개발계획 취소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0조제5항제4호 및 제6항에서는 개발계획 수립·승인 이후 2년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은 온천개발계획의 취소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익침해의 정도와 상대방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온천개발계획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제처 해석례 11-0416 참조)

5-5. 온천원보호지구 지정·해제

■ 질의 요지

- 50만이상 대도시가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또는 변경지정 권한 여부

* 온천법 제28조는 온천개발계획(제10조)과 관련하여 대도시 특례를 명시하고 있으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제10조의2)은 대도시 특례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28조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하여 제5조(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 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제10조(온천개발의 수립)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연혁적으로 온천법(2008. 12. 26. 시행)은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대도시 특례를 인정하였으며, 현행 온천법은 온천원보호지구와 유사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대도시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온천개발계획의 결과에 따른 단순한 후속조치이므로 대도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온천개발계획과 별도로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하여도 대도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온천개발계획(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경미한 변경에도 고시 필요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0조의2제5항 및 온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시·도지사가 온천원보호지구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온천개발계획(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경미한 변경할 때에도 고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온천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해제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구 온천법(2010. 2. 4.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개발계획승인 신청 등 개발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현행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온천법 제10조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온천원보호지구의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제처 해석례 16-0565 참조)

■ 질의 요지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과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를 동시에 진행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시행령 제5조는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천원보호지구이면서 동시에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다만,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와 온천공보호구역이 동시에 지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온천원보호지구를 해제하고 온천공보호구역을 순차적으로 지정할 것인지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해제 절차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지정 및 해제 고시를 동시에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온천업무 편람 p.55 참조)

6 온천의 이용

6-1. 온천이용허가

■ 질의 요지

- 1개의 온천공을 A, B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A에게 온천이용허가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6조제3항, 온천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은 온천이용허가에 대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 온천우선이용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온천공 소유자와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온천공을 공동소유한 경우에 온천이용허가가 가능한 지여부에 대하여는 위 온천법 규정,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참고로, 대법원은 토지소유권의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사전 동의나 사후 승낙없이 무단으로 온천수를 용출하여 사용·판매한 행위는 비록 그 행위자가 토지소유권의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신청인이라 할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5. 17. 2003마543 판결)

■ 질의 요지

-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변경된 경우 온천이용허가 승계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6조제1항은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온천이용허가는 대물적 허가 이외에 대인적 허가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권리를 이전받은 자가 새롭게 온천이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제처 해석례 08-0437 참조)

■ 법제처 해석례 08-0437(2009.1.28.)

질의요지

- 구 「온천법 시행령」(2001. 6. 22. 대통령령 제1724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허가(이하 “일시온천이용허가”라 함)를 받은 자가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7. 1.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이 시행된 후에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의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도 온천이용시설 등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회 답

-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법」이 시행된 후에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의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온천이용시설 등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질의 요지

- 2015년 11월 실시한 정기온천자원조사 결과를 근거로 2020년 9월에 온천이용허가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24조 및 온천법시행규칙 제15조는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조사를 온천이용허가일부부터 5년마다 실시하고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 수리, 온천이용허가 또는 온천이용허가의 연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15년 11월에 실시한 정기온천자원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로이 2020년 온천이용허가를 할 경우, 정기온천자원조사의 만료기한 이내인 2020년 11월까지 온천이용허가를 하고 새로운 정기온천자원조사를 반영하여 온천이용허가의 연장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아파트 개별세대에게 온천수를 목욕용으로 공급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6조제2항 및 온천법시행령 제17조는 온천이용허가의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숙박업, 난방, 에너지시설, 양어시설, 온실, 화장품 제조시설, 의약품 제조시설, 유원시설업, 골프장, 스키장, 수영장, 의료기관, 노인의료 복지시설, 연구소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온천법 제16조제2항 및 온천법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에게 온천수를 목욕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온천이용허가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는 온천을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 온천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면, 난방 및 에너지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에 대한 온천이용허가가 가능합니다.
- 또한, 온천법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온천이용허가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사목에 따른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지 않아 남을 경우 포함) 온천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면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온천이용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온천수를 활용하여 화장품을 생산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는 온천을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화장품 제조시설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포함)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지 않아 남을 경우 포함) 온천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면 화장품 제조시설에 대한 온천이용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목욕용으로 온천이용허가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는 온천을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온천이용허가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제처 해석례 17-0136(2017.7.13.)

질의요지

-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 온천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온천 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온천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회 답

- 시장·군수가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려면 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6-2. 일시이용허가 및 이용 제한

■ 질의 요지

- 온천의 일시적 이용허가에 대한 장기간 연장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6조제3항 및 온천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은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원보호지구 예정지 등에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온천의 일시적 이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온천업무편람(p.69)은 온천에 대한 일시적 이용허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온천법 제21조제4항은 온천 발견신고의 수리 후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등이 3년 이내에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온천발견 신고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장·군수가 온천의 일시적 이용허가기간을 장기간 허용하는 것은 온천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온천 욕조수에 상수도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의 행정조치 방법

■ 회신 내용

- 온천법 16조제3항제6호는 온천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온천이용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온천 욕조수에 상수도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므로 온천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시장·군수는 온천이용허가의 허가조건에 온천수와 상수도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온천법 제18조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산업용, 난방용 제외)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경우에는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온천법 제16조제4항은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 해석례 06-0344(2007.1.5.)

질의요지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파(Spa)라는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온천법」 제16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답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파(Spa)라는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온천법」 제16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6-3. 보양온천 지정

■ 질의 요지

-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수립한 보양온천사업계획에 대해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보양온천 신청할 의무 여부

■ 회신 내용

-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양온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한 온천에 대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양온천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은 시장·군수의 권한이며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보양온천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의 보양온천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온천개발계획 수립만으로 보양온천 승인 신청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등이 보양온천사업계획을 수립·신청한 온천에 대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관련 계획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장·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을 포함한 보양온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양온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온천개발계획 등 사업계획만으로 보양온천을 신청·지정할 경우에는 실현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행안부는 보양온천 승인을 보양온천시설 준공 이후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하여 보양온천을 정식 승인하고 있습니다.(온천개발계획만으로는 보양온천 정식 승인 곤란)

7 온천의 보전·관리

7-1. 수질검사

■ 질의 요지

- 온천목욕장 수질검사이시 욕조수의 수질이 부적합할 경우 행정처분 적용 법령 (온천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7조 및 온천법시행규칙 제11조는 온천목욕장의 원수와 욕조수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처분도 온천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온천 수질검사 항목과 수질검사 방법에 대한 적용 법령
- 수질검사 항목에 온천성분기준(질산성질소 등) 포함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9조, 온천법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온천에 대한 수질검사 항목을 “인체에의 유해여부(음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음용적합여부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온천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온천 수질검사는 온천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온천의 유해성분 기준 (온천법시행령 제2조, 질산성질소 등), 먹는물 수질기준(먹는물관리법 제5조, 음용수)의 항목을 포함하여 인체에의 유해여부, 음용적합여부를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온천업무편람 p.3, p.75)

- 따라서, 시장·군수는 온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질산성질소 등 유해 성분기준을 포함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온천 수질검사방법은 온천목욕장의 경우에는 온천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야 하며, 온천법령에서 구체적인 수질검사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하수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먹는물관리법(음용수),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검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온천목욕장에서 욕조수를 순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염소소독, 레지오넬라균 기준 충족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3은 온천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에 대해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키고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키고 염소소독 외의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온천목욕장에서 욕조수를 순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레지오넬라균 발생 가능성이 낮아 온천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에서 레지오넬라균 기준,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을 제외하고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과 동일)

7-2. 온천 보전

■ 질의 요지

-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기존 온천공과 300m 이내에 지하수공 굴착에 대해 온천법에 따른 온천공 영향조사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5조 및 온천법시행령 제16조는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 구역에서의 지하수 개발, 건설공사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지하수공 굴착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지하수영향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온천원보호지구내에서의 지하수 개발허가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5조 및 온천법시행령 제16조는 온천원보호지구내 지하수개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생활용수 또는 공공시설 업무용, 일일 양수량 30톤 이내의 사용 등에만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온천원보호지구내 지하수개발허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용수 등에 해당 여부, 기존 온천에 미치는 영향(거리, 심도 등)에 대한 분석, 주변 온천이용업소의 의견, 상수도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온천업무편람(p.29)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내 지하수개발허가와 관련하여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상수도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질의 요지

- 온천공을 원상회복하지 않고 지하수로 이용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3조 및 온천법시행령 제14조의2는 온천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온천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하여 허가 받은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1.6월 온천법시행령 개정)
- 따라서, 시장·군수가 온천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온천공을 원상회복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온천공 원상회복 명령 대상(굴착허가를 받은 자, 토지소유자 등)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은 굴착허가 실효 또는 취소 등에 대해 원인을 제공하여 원상회복에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자에게 명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온천법 제13조제3항은 굴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굴착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한 자에게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질의 요지

- 온천발견신고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 온천굴착허가기간을 연장할 경우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 회신 내용

- 온천법시행령 제14조제3항3호는 온천발견신고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온천발견신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1.10월 신설)

- 온천 굴착허가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온천법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연장할 굴착허가일부터 굴착허가기간이 종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지하수법 제4조는 이행보증금의 예치, 원상복구,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은 지하수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수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은 시장·군수는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3. 온천종사자 교육

■ 질의 요지

- 동일한 영업주가 동일 건물에 목욕장업과 숙박업을 영업할 경우, 온천종사자 교육을 1회만 받아도 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26조제1항 단서는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일한 영업주가 동일 건물에서 목욕장업과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온천종사자 교육을 한 번만 받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온천법에 따른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을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의 위생교육 면제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26조제4항은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신고 전의 위생교육은 제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신고 전 위생교육을 제외한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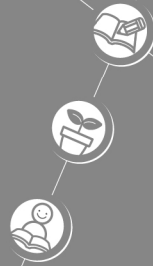
7-4. 과태료

■ 질의 요지

- 굴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이외에 굴착허가가 취소된 경우, 온천법 제3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온천법 제37조제1항 및 온천법시행령 제24조는 굴착허가 취소 등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0.12월, 온천법 개정)



Part



법제처 해석례

-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 온천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온천 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온천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17-0136, 2017. 7. 13., 행정자치부]

질의요지

- 「온천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시장·군수가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려면 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는 경우,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온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아 법령해석요청을 의뢰하였고, 행정자치부는 민원인의 의뢰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시장·군수가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려면 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유

- 「온천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발계획에는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제1호), 온천자원의 개발·이용·관리·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제2호),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 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제3호), 폐기물·하수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제4호),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온천은 온천원 보호지구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은 시장·군수가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려면 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먼저, 「온천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온천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발계획에는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방향(제2항제1호), 온천자원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제2호),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발계획은 해당 온천원의 개발·이용에 대한 종합적 계획으로서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기준과 방향이 되고,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온천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개발계획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온천의 이용에는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의 이용뿐만 아니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서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서의 온천의 이용에 관한 사항도 개발계획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는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형식과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더라도 「온천법」 제16조제2항의 의미는

온천은 원칙적으로 온천원보호지구에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우선 이용하도록 하되,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 남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발계획에 따라 ①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고 ②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개발계획에는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이용뿐만 아니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이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장·군수가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려면 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도 해제되는지 여부 (「온천법」 제21조 등 관련) [16-0565, 2016. 11. 7., 행정자치부]

질의요지

-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제1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구 「온천법」(2010. 2. 4.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이라 함)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함. 이하 같음)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지?

〈 질의 배경 〉

- 행정자치부는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관하여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온천원보호지구도 별도의 해제 절차 없이 지정 해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 「온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제1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제4호)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제5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서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온천개발계획 승인의 순서대로 온천개발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서 온천발견신고수리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신고수리가 취소된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바,
- 이 사안은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먼저,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를 해제할 때 적용할 법률에 관하여 살펴보면,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례 참조),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해제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률은 현행 「온천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2010년 개정 전 「온천법」 제21조제5항에서 온천발견신고수리가 취소된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취소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수리의 취소 사유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제1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또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의 해제에 대해서는 현행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2제5항에서는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였을 때에는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온천개발계획이 취소되면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도 해제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상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였던 “온천원이 고갈되었거나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2010년 개정 「온천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현행 「온천법」상 온천원보호지구는 같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 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현행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수리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온천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가 해제되었음을 고시하는 등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온천법」이 개정된 이후 신청한 온천개발계획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적용하여야 할 규정(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16-0444, 2016. 11. 10., 행정자치부]

질의요지

-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라 함)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후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도록 온천개발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된 「온천법」(이하 “2010년 개정 「온천법」”이라 함)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과 온천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도록 변경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된 이후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행정자치부는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보호지구에 대하여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된 이후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온천개발 계획을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된 이후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유

- 1995년 개정 전 「온천법」 제3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후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도록 온천개발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2010년 개정 「온천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2제4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는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온천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온천원보호지구 지정과 온천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은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된 이후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2010년 개정 「온천법」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먼저, 경과조치는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과도적 조치로서(법제처 2016. 9. 8. 회신 16-0252 해석례 참조),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르면 시장·군수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은 시·도지사가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온천원보호지구의 신청·지정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승인이 별개의 행위였으나, 2010년 개정 「온천법」에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과 온천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신청이 있거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의 경우에는 2010년 개정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 등과 관련하여 어떤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그 취지는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온천원보호지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고,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하도록 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적용하여야 할 종전의 규정은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당시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의 규정”이란 개정 법령의 본칙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을 말하므로(법제처 2010. 7. 20. 회신 10-0199 해석례 참조),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이란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될 당시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 아니라, 「온천법」이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온천법」이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제4조),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제10조)의 순서로 온천개발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0년 개정 「온천법」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함과 동시에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온천개발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도록 개정하였는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종전의 규정”이란 위와 같이 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제4조)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제10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제10조)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 외에 다른 규정에 대해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된 이후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여부(「온천법」제10조 등 관련)

[14-0141, 2014. 5. 22., 충청북도 충주시]

질의요지

-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유원지)에 관한 사항을 말함. 이하 같음]의 결정이 의제된 후,
- 시·도지사가 「온천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의제된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효력을 잃는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한지?

회 답

- 시·도지사가 「온천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의제된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유원지)에 관한 사항을 말함]의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함)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결정·승인·지정·인가·면허·협의·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함)의 결정”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기반시설의 하나로 “공간 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온천법」 제10조 제5항에서는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유원지)에 관한 사항을 말함. 이하 같음]의 결정이 의제된 후, 시·도지사가 「온천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의제된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효력을 잃는지, 아니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과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별개의 법령에 근거한 각기 다른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각각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처분 절차를 별개로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온천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행정행위의 실효는 각각 행정행위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록 의제규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복수의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경우 행정행위의 실효는 각각 행하여져야 하므로, 의제되는 행정행위가 실효되기 위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1. 7. 15. 회신 11-0294 해석례 참조), 「온천법」 제10조제5항에서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조의2제5항의 규정과 달리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의 취소 시 위와 같이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 등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이와 같은 인·허가 등의 의제 취지 및 「온천법」 제10조제5항의 법문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해당 개발계획 또는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나아가, 하나의 행위로 행정행위가 종결되는 경우와 달리, 일련의 연속적 행정행위의 시작이 되는 행정행위로서 해당 행정행위에 근거하여 연속적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또한 여러 이해당사자가 관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작이 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실효 여부 결정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1. 7. 15. 회신 11-0294 해석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온천개발계획의 결정으로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개발계획 또는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것은 행정작용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도지사가 「온천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의제된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온천법」(법률 제10005호) 부칙 제4조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의 의미(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10-0199, 2010. 7. 20.]

질의요지

-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라 함)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상 온천발견 신고자가 온천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과 굴착허가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이 개정 「온천법」(법률 제10005호, 2010. 2. 4. 공포, 8. 5. 시행되는 것을 말함. 이하 “2010년 개정 「온천법」”이라 함) 부칙 제4조의 해석상 해당 온천지구의 지정 당시 시행되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 되는지?

회 답

-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상 온천발견 신고자가 온천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온천개발 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은,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으로서 2010년 개정 「온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법률 제7856호, 2006. 3. 3. 전부개정, 7. 1. 시행)과 그 이후 일부 개정된 규정이라 할 것이지, 해당 온천지구의 지정 당시 시행되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굴착허가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 경과조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유

- 「온천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1995년에 「온천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둔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해당 전부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지정된 온천지구는

해당 전부개정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지구로 의제되었고, 2001년에 「온천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둔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그 일부개정 「온천법」 시행 당시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그 일부개정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되었습니다.

- 그 이후, 「온천법」은 2006년에 전부개정되었고, 해당 전부개정 당시 해당 전부개정 「온천법」(이하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이라 함) 부칙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바, 따라서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된 경우를 포함함)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와 관련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그리고, 2006년 「온천법」이 전부개정된 이후에 온천개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주된 내용의 변경 없이 일부 개정이 여러 번 있다가 2010년에 「온천법」이 개정되어 온천개발계획 승인 절차가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던 것을, 2010년 개정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절차와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절차를 통합하면서, 그 부칙 제4조에서 같은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경과조치는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결국 경과조치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은 개정 법령의 본칙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을 말하므로(법제처 2005. 9. 15. 회신, 05-0026 해석례 참조),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2010년 개정 「온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과 그 이후 일부 개정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상 온천발견 신고자가 온천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온천지구와 관련하여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승인에 있어서 유효하게 적용되는 규정은 2010년 개정 「온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과 그 이후 일부 개정된 규정이라 할 것이지, 그 전에 이미 효력이 상실된 법 규정인 “온천지구 지정 당시 시행되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한편,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절차만이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굴착허가는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등(일시온천이용허가의 양도) 관련
 [08-0437, 2009. 1. 28.,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활성화과]

질의요지

- 구 「온천법 시행령」(2001. 6. 22. 대통령령 제1724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허가(이하 “일시온천이용허가”라 함)를 받은 자가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7. 1.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이 시행된 후에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의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도 온천이용시설 등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회 답

-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법」이 시행된 후에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의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온천이용시설 등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 유

- 구 「온천법」(2001. 1. 26. 법률 제639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 등을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지상권·전세권 등 해당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목욕장·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 온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온천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 등을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온천법 시행령」(2006. 7. 21. 대통령령 제1961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4항에서는 시장등은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목욕장·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온천일시이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과 달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시온천이용허가는 온천발견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해당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목욕장·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야만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일종의 혼합적 허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혼합적 허가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허가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허가와 관련된 제반 시설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고 하여도 당연히 그 허가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2. 26. 2001다53622 판결), 구 「온천법」 또는 「온천법」에서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나 허가명의자의 명의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일시온천이용허가도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는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구 「온천법 시행령」과 달리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온천발견신고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온천법」이 시행된 후에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양수받은 자는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즉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일시온천이용허가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 따라서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법」이 시행된 후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의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온천이용시설 등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08-0430, 2009. 3. 5., 강원도 속초시 관광과]

질의요지

- 토지 소유자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온천법”이라 함) 시행 전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토지의 현재 소유자가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회 답

- 토지 소유자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토지의 현재 소유자도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유

- 개정 온천법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합니다.
- 온천우선이용권자와 관련된 온천법령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종전 「온천법」(2001. 1. 26. 법률 제639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1. 4. 27. 시행된 것과 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시장·군수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등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에게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개정 온천법 제2조제2호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어 본문에서는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하고, 단서에서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하였으며, 개정 온천법 제23조에서는 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 토지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용자·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권자가 온천우선이용권자라고 규정한 개정 온천법 제2조제2호 단서는 개정 온천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추가된 규정인데,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하는 자(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등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을 경우 그 토지를 이전받은 자가 개정 온천법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도 개정 온천법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개정 온천법 제2조제2호 단서를 추가하면서 부칙에 아무런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둔 바가 없는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어 명시적으로 법률 시행일 전에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바가 없다면, 법률 시행일 전에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가 안정적이고 확실한 자에 대하여 온천우선이용허가권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온천의 적정한 개발을 도모하고, 온천 개발을 둘러싼 이권 분쟁과 무질서한 온천개발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 위 개정 규정의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 규정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즉,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같은 법 시행 후의 같은 법 제2조제2호 단서의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므로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되는 것이고, 개정 규정 시행 후로 한정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 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그러한 지위를 승계받아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토지의 현재 소유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온천법」 제12조 등(토지의 굴착허가대상 등) 관련

[08-0253, 2008. 10. 15.,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활성화과]

질의요지

- 가. 2001. 1. 26. 법률 제6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온천법」(이하 “구 온천법”이라 함)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신고 수리된 해당 온천공이 속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 나. 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해당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수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회 답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이후 신고 수리된 해당 온천공이 속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굴착하고자 하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거나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해당 온천발견 신고인은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수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 및 나의 공통사항

- 「온천법」 제2조제2호 본문 및 단서에 따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되,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 토지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용자·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온천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을 신청하거나 온천공보호구역으로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신고 받은 시장·군수는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을 검사한 결과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온천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를 확대하거나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하고자 하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동의를 절차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온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토지굴착 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토지소유권자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굴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제1호), 굴착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제2호), 굴착 및 복구계획서(제3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제4호)를 첨부한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 굴착사용동의서의 유효기간을 동의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현행 「온천법」 상의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부여되는 법령상의 이익에 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나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당 온천개발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되었음에도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직접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굴착허가 또는 온천의 이용허가에 있어 우선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온천발견신고자가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념을 정의한 현행 「온천법」 제2조제2호를 살펴보면, 같은 호 본문에서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문장에 있어 단서는 동일한 조·항·호·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온천법」 제2조제2호 단서는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토지소유권자가 다른 자로 변경된 경우에 있어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이미 인정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법적 지위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관하여 규정하였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11. 21. 회신 07-0364 해석례).

- 즉, 위 「온천법」 제2조제2호 본문의 규정은 최초 온천발견 신고인이면서 신고 수리 당시 해당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같은 호 단서는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에 토지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본문에 따라 이미 인정된 온천우선이용권을 변경된 토지소유권자가 갖게 됨을 규정한 것이고, 온천발견 신고인(신고가 수리된 자를 말함. 이하 같음)이기만 한 자가 나중에 토지를 소유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같은 법 제2조제2호 본문의 동시요건 문언에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8. 5. 9. 회신 08-0041 해석례).
- 또한 「온천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2001. 1. 26. 법률 제6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서는 온천발견신고인에 대하여 토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시장·군수가 토지의 굴착이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하거나 온천이용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용자,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1. 1. 26. 개정 이후에는 온천발견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혜택을 부여하였고(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온천법」), 그 후 현재까지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률 개정의 취지는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가 안정적이고 확실한 온천발견 신고인에 한하여 온천 우선이용 허가의 혜택을 부여하고 온천 개발을 둘러싼 이권 분쟁과 무질서한 온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천우선이용 등 혜택의 수혜자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그 혜택의 수혜자인 온천우선 이용권자의 범위 또한 법령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이후 신고 수리된 해당 온천공이 속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온천발견 신고의 수리 당시에는 해당 온천발견 신고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현행 「온천법」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위와 같이 온천우선이용 등 혜택의 수혜자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온천법」이 개정되면서 구법상 지위를 유지·보호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둔 바 없었음), 또한 위 본문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따라서 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이후 신고 수리된 해당 온천공이 속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 이용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내에 대하여

- 「온천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경우를 굴착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이기만 하면, 최초의 온천 발견을 위한 것이거나 온천 발견 후 온천수의 추가확보를 위한 것이거나 굴착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굴착허가의 대상자를 굴착하고자 하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굴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온천법」 제23조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우선하여 토지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질의의 내용과 같이 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가 그 신고의 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질의 가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온천법」 상의 온천우선이용권자 즉, 온천발견 신고인으로서 그 신고의 수리 당시 해당 온천공 소재 토지를 소유한 자 또는 그 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굴착하고자 하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거나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해당 온천발견 신고인은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수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온천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08-0041, 2008. 5. 9.,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본부 생활여건개선팀]

질의요지

- 온천공 소재 토지 소유자가 최초 온천발견 신고를 한 신고인으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 받으면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회 답

- 최초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 받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온천공 소재 토지 소유자는 최초 온천발견 신고인의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없으므로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유

- 「온천법」 제2조제2호 본문 및 단서에 따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하 “온천발견신고인”이라 함)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되,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조제2호 단서의 “온천우선이용권자”에 관한 규정은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에 있는 토지소유권자가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가 함께 이전된다 [법제처 2007. 11. 21. 07-0364,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해석례]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안과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 사안은 같은 법 제2조제2호 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 그래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최초 온천발견신고인이면서 동시에 해당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는바, 온천발견 신고인이 아닌 자로서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자가 나중에 최초 온천발견신고인이기만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된다는 주장은 최초 온천발견신고인이 아닌 자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같은 법 제2조제2호 본문의 동시요건 문언에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중의 목욕용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토지의 소유권자의 동의 등을 얻도록 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온천공의 지름 등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해당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온천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고 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11호 서식은 소재지, 온천발견상황,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상황, 개발계획수립 및 개발추진상황, 온천현황, 이용현황, 온천자원보전관리, 온천자원보전관리 조치상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온천발견상황란에서 발견신고일자, 신고수리일자, 발견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온천발견신고인이기만 한 자에게는 특별한 법적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온천공 소재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는 경우에 굴착허가나 온천 이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온천을 발견한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온천 관리대장에 온천발견신고인을 등재하는 등 필요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온천법령 어디에도 온천발견신고인의 명의변경절차나 그 지위승계의 허용가능성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 최초 온천발견신고인이기만 한 자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그 온천발견신고인의 지위를 승계시키기 위하여 온천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 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온천관리대장에 온천발견신고인의 성명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온천발견신고인의 명의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시장·군수에게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온천발견신고인의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사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조제2호 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되기 위하여 온천발견신고인의 명의변경이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 한편, 온천법령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2001. 1. 26. 법률 제6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온천법」 제18조에서는 온천발견신고인에 대하여 토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시장·군수가 토지의 굴착이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 허가하거나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1. 1. 26. 개정 이후의 「온천법」에서는 온천발견신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혜택을 삭제하고 그 혜택을 처음(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온천법」 제18조)에는 온천발견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여하고, 그 후 현재까지는 온천우선 이용권자에게 부여되도록 변경함으로써, 온천의 우선 이용 혜택을 받는 자를 처음에 온천발견신고인에서 최종적으로 온천발견신고인이며 동시에 해당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자로 한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법률을 개정한

입법취지는,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가 안정적이고 확실한 온천발견신고인에 한하여 온천 우선이용 허가의 혜택을 부여하고, 온천 개발을 둘러싼 이권 분쟁과 무질서한 온천개발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종전에 온천발견신고인에게 부여된 온천 우선이용 허가의 혜택이 없어진 현재의 제도 내에서 명시된 규정도 없는데 온천발견 신고인의 법적 지위가 승계된다고 그 법적 지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행 법령을 해석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최초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 받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온천공 소재 토지 소유자는 최초 온천발견 신고인의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없으므로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 이용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07-0364, 2007. 11. 21., 행정자치부]

질의요지

- 「온천법」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토지를 이전받은 소유권자는 위 규정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인지?

회 답

-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토지를 이전받은 소유권자는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닙니다.

이 유

- 「온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법령문장에 있어서 단서는 동일한 조·항·호·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온천법」 제2조제2호 단서는 위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토지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이미 인정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법적 지위가 신·구 소유권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에 있는

토지소유권자가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가 함께 이전되는 것입니다.

- 우선, 「온천법」 제2조제2호 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되기 위하여는, ①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에게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②그 신고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리된 자로서 ③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견 질의에 있어서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온천법」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며, 그 결과 토지소유권 이전에 수반될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 따라서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라는 요건과 함께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자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자료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만이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새로운 소유권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온천법」 제16조제3항 (업종오인용어의 사용)

[06-0344, 2007. 1. 5.]

질의요지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파(Spa)라는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온천법」 제16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답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파(Spa)라는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온천법」 제16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유

- 「온천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온천법 시행령」에서는 법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동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스파(Spa)라는 용어를 목욕장의 상호에 사용하는 것이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스파(Spa)의 어원이 유럽의 유명온천지에서 유래하고, 스파(Spa)시설이라 함은 온천과 관련된 보양시설을 지칭한다고 일응 볼 수도 있으나, 광의로는 온천과 관련이 없는 물을 이용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샤워시설 등을 총칭하여 사용되고 있는바, 스파(Spa)라는 용어가 단순히 온천이라는 의미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그 의미가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가진 스파(Spa)라는 용어를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온천법」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온천법」 제16조제3항에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온천표시만으로도 온천과 일반 목욕장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온천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온천에 관한 사실을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스파(Spa)라는 용어를 상호에 사용하는 것이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행위가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온천법제18조(온천발견자의지위)관련

[05-0100, 2005. 12. 28., 행정자치부]

질의요지

- 가. 「온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권자가 「동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온천발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굴착허가나 지하수 개발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권자가 당연히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토지소유권자는 「동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당해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동 신고인이 당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굴착허가 및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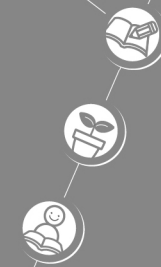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온천법 제4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온천원보호지구로의 지정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의 지정 및 당해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굴착허가 및 온천의 이용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거나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온천을 발견하여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제출이나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의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온천발견과정에서 당해 온천탐사 등의 경험과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정당한 이용권을 바탕으로 온천개발이 가능한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온천법령」상 온천발견의 신고를 한 자의 지위승계나 명의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천발견자에게 부여되는 이러한 혜택의 성질상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등에 따라 온천발견자의 지위가 당연히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15142 판결 참조).
- 따라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받은 자는 「온천법 제4조의2」, 「제17조」 및 「제18조」,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온천을 발견하여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당해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온천법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온천공에 대한 굴착허가 및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온천을 개발·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온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굴착이나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용자알선 등을 받기 위해서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두 가지 요건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바, 온천발견신고가 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온천발견의 신고를 한자가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외에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토지의 굴착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온천법 제18조」에서 부여된 “토지의 굴착 및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의 혜택은 온천발견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여된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온천은 그것이 용출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아닌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온천법」에서는 온천발견자의 권리를 「광업법」상 광업권과 같은 별도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온천발견자의 지위를 구분하여 「온천법 제18조」의 “토지의 굴착 및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의 법률상 이익이 부여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온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하수법」의 규정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하수법 제7조」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온천발견 신고를 한 자의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온천발견자가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Part



온천법령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목 차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106	제1조(목적) 106	제1조(목적) 106
제2조(정의) 106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 106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07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107		
제4조 삭제 108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109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109	제2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등 신청) 109 제2조의2(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110 제3조(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고시 등) 111 제3조의2 삭제 113
제6조(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113	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113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114 제6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등) 115	제4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116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116	제6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119 제6조의3(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119	제4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119
제8조(적용의 배제) 120		
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120		
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122	제6조의4(온천도시의 지정) 122	제4조의3(온천도시의 지정신청) 122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124	제7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124 제8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 126 제9조(개발계획의 변경) 127 제10조(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 129 제11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130	제5조(온천개발계획의 승인·변경신청) 124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 ··· 131	제12조(인·허가 등의 의제) 131	제5조의2(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137
제10조의3(전략환경영향평가 등) 138		
제10조의4(개발사업의 시행) 139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141		제6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141
제12조(굴착허가) 141	제13조(굴착허가 신청) 141	제7조(굴착허가신청 등) 141
제12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 145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145	제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146
제13조(원상회복 등) 147	제14조의2(원상회복의 예외) 147	
	제14조의3(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 148	
제14조(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151	제15조(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 151	제8조(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 151
		제8조의2(수문관측시설) 151
제15조(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152	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 152	제9조(지하수개발 허가신청) 152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153	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153	제10조(온천의 이용허가신청) 153
	제18조(온천과 관련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 금지) 157	제10조의2(온천표시) 157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허가등 의제) …… 158	제19조(허가를 위한 조사 의뢰) …… 157	제11조(온천의 수질기준 등) …… 159
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 159		제12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 160
제18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 160		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 …… 162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 160		제13조의2(온천발견신고의 반려) …… 166
제20조(온천의 공동급수) …… 162		제14조 삭제 …… 167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 162		제15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 168
제22조(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 167		제16조 삭제 …… 169
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 167		제17조(허가증의 교부) …… 169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 168		제18조(관계공무원 출입증표) …… 171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 169	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 …… 169	제18조의2 삭제 …… 171
제25조(출입검사 등) …… 170	제20조의2(온천자원 관측자료 등의 제공) …… 170	제19조(온천종사자 교육) …… 171
제26조(온천종사자 교육) …… 171		
제27조(온천협회의 설립 등) …… 172		
제27조의2(협회의 사업 등) …… 174	제2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 173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제28조(대도시에 관한 특례) 175		
제29조(시정요구) 175		
제30조(청문) 175		
제31조(수수료) 176	제22조(수수료) 176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177	제23조(규제의 재검토) 177	제20조(규제의 재검토) 177
제32조(벌칙) 178		
제33조(벌칙) 179		
제34조(벌칙) 179		
제35조(벌칙) 180		
제36조(양벌규정) 180		
제37조(과태료) 180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80	
부칙 181	부칙 181	부칙 184

- ▶ 온천법 시행령 별표 197
- ▶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 203
- ▶ 온천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09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06. 3. 3 법률 제7856호</p> <p>2007. 4. 6 법률 제833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p> <p>2007. 4.11 법률 제8343호 (관광진흥법)</p> <p>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p> <p>2008.12.26. 법률 제9202호</p> <p>2010. 2. 4 법률 제10005호</p> <p>2011. 5.30 법률 제10732호</p> <p>2011. 7.21 법률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p> <p>2013. 3.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p> <p>2013. 7.16 법률 제11896호</p> <p>2014. 1.14 법률 제12248호(도로법)</p> <p>2014. 6. 3 법률 제1273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2014. 6. 3 법률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p> <p>2014.10.15. 법률 제12797호</p> <p>2014.11.19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p> <p>2015. 7.20 법률 제13401호</p> <p>2016. 1.19 법률 제13805호(주택법)</p> <p>2016.12. 2 법률 제14284호</p> <p>2016.12.27 법률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p> <p>2017. 4.18 법률 제1479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2017. 7.26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p> <p>2020. 3.31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p> <p>2020.12.22 법률 제17697호</p> <p>2021. 4.20 법률 제18088호</p>	<p>전문개정 2010. 8. 4 대통령령 제22320호</p> <p>2011. 1.17 대통령령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p> <p>2012. 4.10 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13. 3.23 대통령령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2015. 6.30 대통령령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p> <p>2016. 5.31 대통령령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p> <p>2017. 2.13 대통령령 제27858호</p> <p>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2017.12.29 대통령령 제28521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p> <p>2020. 6.23 대통령령 제30795호</p> <p>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2021. 6.22 대통령령 제31804호</p> <p>2021.10.19 대통령령 제32066호</p>	<p>전문개정 1996. 7. 3 내무부령 제686호</p> <p>1999. 2. 5 행정자치부령 제34호</p> <p>2000. 6.16 행정자치부령 제99호</p> <p>2001. 6.27 행정자치부령 제137호</p> <p>2003.12.30 행정자치부령 제212호</p> <p>2005. 2.11 행정자치부령 제26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07. 9.18 행정자치부령 제393호</p> <p>2008. 3. 4 행정안전부령 제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2008. 3.24 행정안전부령 제7호</p> <p>2010. 8.11 행정안전부령 제154호</p> <p>2013. 3.23 안전행정부령 제1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2014. 4. 4 안전행정부령 제51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4.11.17 안전행정부령 제9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2016.12.15 행정자치부령 제91호</p> <p>2017. 7.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2020. 6.23 행정안전부령 제187호</p> <p>2021. 3.11 행정안전부령 제241호</p> <p>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p> <p>2021.10.21. 행정안전부령 제282호</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제1조(목적)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온천우선이용권자”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受理)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溫泉孔)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 3. “온천종사자”란 온천을 대중(公衆)의 목욕용이나 음용(飲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 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온천전문검사기관”이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p>제1조(목적)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산성질소(NO₃-N)는 10mg/L 이하일 것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₂Cl₄)은 0.01mg/L 이하일 것 3. 트리클로로에틸렌(C₂HCl₃)은 0.03mg/L 이하일 것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의 발달 및 온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에는 해당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온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온천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온천보전, 온천문화 창달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2. 온천 개발계획·관리·보전 등의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4. 온천수의 음용화 추진과 미용 관련 등 온천 산업의 발전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온천수 재활용에 관한 대책 수립과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온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온천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21. 4. 20.></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4조 삭제 <2010. 2. 4.></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을 받아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7. 16.></p> <p>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 용도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원(溫泉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 	<p>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1. 6.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포함한다) 2. 예정구역 안의 토지조서 3. 예정구역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 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 	<p>제2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등 신청)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 10. 21.></p> <p>②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및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0. 8. 11.] [제목개정 2021. 10. 21.]</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는 경우</p> <p>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 또는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p> <p>4.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p> <p>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⑤ 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p> <p>⑥ 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4. 20.></p> <p>⑦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p>	<p>③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7. 2. 13., 2021. 6.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정 양수량, 개발가능성 등에 비추어 소규모 온천개발에 적합한 지역인지 여부 2. 토지의 용도 및 개발가능 부지의 면적 3. 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 	<p>제2조의2(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p> <p>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지정안(변경안 및 해제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역의 범위를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11. 5. 30.]</p>		<p>고하고, 해당 온천공보호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21.]</p> <p>제3조(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고시 등)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고시와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고시는 각각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명칭·위치·범위 및 면적 2.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3.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가 명시된 지형도면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6. 23.></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해 고시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고시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해야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해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6. 23.></p> <p>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절차·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제6조(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① 시장·군수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이하 “온천공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시·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필요성의 인정을 말한다)을 하면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온천공보</p>	<p>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①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p>	<p>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8. 11.]</p> <p>제3조의2 [종전 제3조의2는 제5조로 이동 <2007. 9. 18.>]</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전문개정 2011. 5. 30.]</p>	<p>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3.></p> <p>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21. 1. 5.></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1. 도시·군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p> <p>2.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 온천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p> <p>② 삭제 <2021. 10. 19.></p> <p>③ 법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온천공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10. 19.></p> <p>제6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등)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후단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검사의 경우에 한정한다.</p> <p>1. 온천공의 위치 및 현황</p> <p>2.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이 경우 1일</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온천전문 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2항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 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p>	<p>적정 양수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하고, 1천톤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p> <p>3. 온천공의 수위 변동 상황 4. 온천수의 용출 온도 및 성분</p> <p>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1일 적정 양수량을 검사할 때에는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 외의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이 150톤 이상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과 장비”란 별표 1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말한다. <신설 2021. 6. 22.></p> <p>[제목개정 2021. 6. 22.]</p>	<p>제4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으 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등록신청서(전자문서 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의3서 식과 같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그 인정서를 말한다)와 법인이 아닌 자의 설립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p> <p>②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과 장비(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p> <p>1.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p>		<p>서를 제출한 자의 전문인력 및 장비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1.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등록대장예의 등재 및 관보예의 게재 2.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미 교부받아 사용 중인 등록증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1. 전문인력 2. 장비 3. 대표자 및 영업소 소재지</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위반되는 경우</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1. 4.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3.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p>		<p>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 6. 23.> [전문개정 2010. 8. 11.]</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p> <p>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공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p> <p>1.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p> <p>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보고서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 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 2021. 4. 20.></p> <p>⑧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 2021. 4. 20.></p>	<p>제6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 10. 19.]</p> <p>[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4로 이동 <2021. 10. 19.>]</p> <p>제6조의3(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납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p> <p>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p>	<p>제4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0. 21.]</p> <p>[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1. 10. 21.>]</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8조(적용의 배제)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6.> [전문개정 2011. 5. 30.]</p> <p>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온도·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이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이용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양온천을 개발·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p>	<p>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③ 제1항에 따라 보양온천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양온천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보양온천도 그 범위가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p>⑤ 보양온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해제, 시설기준 및 보양온천 표시 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전문개정 2011. 5. 30.]</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온천도시의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천도시에 대하여 온천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온천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 관련 시책 수립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6조의4(온천도시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온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온천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하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온천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온천지역에 위치한 온천의 온도·성분 등이 우수할 것 2. 해당 온천지역에서 온천 관련 지역축제 등 온천관광을 활성화한 노력이 우수할 것 3. 해당 온천지역의 온천 이용현황 및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온천산업 육성에 기여 	<p>제4조의3(온천도시의 지정신청)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을 하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온천도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도시 조성의 기본방향을 기재한 서류 2. 해당 지역 온천의 온도·성분, 이용인원 및 온천시설 현황 등에 관한 서류 3. 온천관광 활성화 및 온천산업 육성에 관한 추진실적을 기재한 서류 4. 온천도시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시책에 관한 서류 5. 온천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6. 온천도시 조성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주민·온천관계자·전문가와의 협업체계 구축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할 수 있을 것</p> <p>4. 해당 온천지역의 온천 관련 시설현황 및 관련 자원과의 연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p> <p>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온천도시의 지정을 해제한다.</p> <p>1. 제2항에 따른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p> <p>2. 제4항 각 호에 따른 온천도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p> <p>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도시의 지정 또는 그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p> <p>⑦ 제6항에 따라 온천도시의 지정 또는 그 해제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p>	<p>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p> <p>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21. 3. 11.] [제4조의2에서 이동 <2021. 10. 21.>]</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p>	<p>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천도시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23.] [제6조의2에서 이동 <2021. 10. 19.>]</p> <p>제7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적인 온천수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온천공별 책임급수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2. 1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p>	<p>제5조(온천개발계획의 승인·변경신청) ① 영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리적 여건 2.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필요한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 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p>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2.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 등의 배치 	<p>또는 구청장의 온천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p> <p>② 영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온천 우선이용권자의 온천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p> <p>③ 영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에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로 작성된 예정지구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0. 8. 11.]</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3. 주변환경과의 적합성 4.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5. 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 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p> <p>제8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제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제출한 승인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승인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승인신청</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 2. 온천자원의 개발·이용·관리·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3.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4. 폐기물·하수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 	<p>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은 개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개발계획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서는 아니 된다.</p> <p>제9조(개발계획의 변경) ① 온천우선이용권자(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온천이용시설의 증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온천개발면적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한 사항</p> <p>③ 개발계획의 대상 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p>	<p>3.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의 감소나 천재지변 등으로 온천개발면적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당시의 여건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승인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온천우선이용권자(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입야도를 확인하</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④ 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21. 4. 20.></p> <p>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발계</p>	<p>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리적 여건 2. 변경하려는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 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p>④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3.></p> <p>⑤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온천개발 면적, 개발계획에 따른 예정지구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해당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10조(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 ① 시장·군</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이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자원의 변동으로 개발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 또는 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⑧ 시·도지사는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결과 개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발계획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p>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법 제10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와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개발계획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법 제10조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제1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p> <p>제11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전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2. 13.></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수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결정·승인·지정·인가·면허·협의·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p>	<p>②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p> <p>제12조(인·허가 등의 의제) 법 제10조의2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7. 16.,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6. 12. 27., 2017. 4. 18., 2020. 3. 31., 2021. 4.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제29조에 따른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 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p> <p>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p> <p>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p> <p>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p> <p>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의 승인</p> <p>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p> <p>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p> <p>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p> <p>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p> <p>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p> <p>14.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허가</p> <p>1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p> <p>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p> <p>18.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p> <p>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p> <p>2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p> <p>2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 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p> <p>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p> <p>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p> <p>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p> <p>26.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p> <p>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p> <p>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p> <p>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p> <p>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p> <p>④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p>		<p>제5조의2(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구를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할 때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2</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4. 20.)</p> <p>⑥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10조의3(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시·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온천개발로 인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3.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2.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 		<p>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5조제6항”은 “법 제10조의2제5항”으로,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원보호지구”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본다.</p> <p>[본조신설 2021. 10. 21.]</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우: 개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p> <p>[본조신설 2010. 2. 4.] [제목개정 2011. 7. 21.]</p> <p>제10조의4(개발사업의 시행)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용수권(用水權)이나 그 밖의 농지 개량시설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立木)이나 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물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土石) 또는 모래와 조약돌 <p>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경우 시장·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행기간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용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p> <p>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 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개발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⑥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처분,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등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2.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제12조(굴착허가) ①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湧出口)를 확대하거나 그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13조(굴착허가 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굴착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 소유권자의 굴착사용 동의서(타인 소유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로 한정한다) 2. 굴착 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p>	<p>제6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법 제11조에 따른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07. 9. 18.></p> <p>[본조신설 2001. 6. 27.]</p> <p>[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제4조의2에서 이동 <2007. 9. 18.>]</p> <p>제7조(굴착허가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굴착 등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토지굴착 유효기간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하려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동意的 절차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p>	<p>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2. 13.></p> <p>1.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p> <p>2. 법 제12조제4항제3호가목에 따라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일 현재 굴착할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13.></p> <p>④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토지굴착을 하려는 자는 지번, 지목, 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이 적힌 토지굴착동의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2. 13.></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굴착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제1항 후단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도시·군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p> <p>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p> <p>⑤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온천 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천굴착신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p> <p>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허가받은 굴착공사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p> <p>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p> <p>[전문개정 2011. 5. 30.]</p>	<p>⑤ 법 제12조제6항 단서에 따라 토지굴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굴착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굴착동의서의 동의기간은 연장하려는 허가의 유효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2. 13.></p>	<p>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온천굴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 소유권자의 온천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를 굴착하는자로 한정한다) 2. 온천굴착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복구계획서 및 굴착단면도(각각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 <p>③ 제2항에 따른 굴착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일 현재 굴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6. 23.></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제12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을 이용 또는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굴착허가를 받으려는 자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제21조제1항에 따라 온천발견을 신고하려는 자 <p>②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방법·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자는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11. 1. 17., 2015. 6. 30., 2016. 5. 31., 2021. 6.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지급보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보증서 	<p>④ 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 소유권자의 온천 굴착사용 동의서에는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목적,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11.]</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본조신설 2013. 7. 16.]</p>	<p>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주택도시보증공사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바.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4. 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융회사나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에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②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22., 2021. 10. 19.> 1. 법 제12조에 따른 굴착허가의 경우: 굴착</p>	<p>제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영 제14조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 8. 11.> 1. 온천공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비용과 되메움 비용</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제13조(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p>	<p>허가일부터 온천이 발견되지 않거나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p> <p>2. 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경우 : 온천이용허가일부터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p> <p>3.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경우: 온천발견신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p>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3.></p> <p>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p> <p>제14조의2(원상회복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p>	<p>2. 그 밖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p> <p>②제1항에 따른 제거·절단비용 및 되메움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천공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해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1., 2020. 6. 23., 2021. 9. 7.></p> <p>[본조신설 2007. 9. 18.]</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20. 12. 22.></p> <p>1.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굴착허가를 받아 토지를 굴착하였으나 온천이 발견되지 아니하거나 굴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p> <p>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p> <p>3.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가 취소된 경우</p> <p>② 시장·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p> <p>③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p>	<p>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p>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p> <p>2.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하여 허가 받은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p> <p>3.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온천을 개발·이용하는 경우</p> <p>4. 그 밖에 지형 여건상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6. 22.]</p> <p>제14조의3(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원상회복 의무자는 원상회복을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실시일을</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개정 2020. 12. 22.〉</p> <p>④ 시장·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한 경우에는 제12조의2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예치한 이행보증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2.〉</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목개정 2020. 12. 22.]</p>	<p>통보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원상회복 의무자는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 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연장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연장 기간은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p> <p>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대집행의 통지는 원상복구 착공 예정일 7일 전까지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해야 한다.</p> <p>⑥ 법 제13조에 따른 원상회복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원상회복 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굴착공 내부를 확인하여 설치자재 및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처음에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시멘트 슬러리, 점토(粘土) 등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재료로 되메울 것. 다만, 지표하부보호벽(이하 이 항에서 “보호벽”이라 한다)의 하부에는 모래 등 물이 스며들기 쉬운 재료를 주입하여 되메울 수 있다.2. 보호벽은 제거할 것. 다만, 보호벽을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양을 터파기한 후 지표로부터 깊이 1미터 이상 보호벽을 절단할 것 <p>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기간 내에 제6항에 적합하게 원상회복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1. 6. 22.]</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제14조(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① 온천의 채수(採水)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같은 성능의 장치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시장·군수는 동력장치의 설치가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p>	<p>제15조(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동력장치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3.></p>	<p>제8조(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동력장치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 8. 11.> [중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제6조에서 이동 <2007. 9. 18.>]</p> <p>제8조의2(수문관측시설) ①법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9. 18., 2010. 8. 1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위측정관(안쪽 지름이 30밀리미터 이상인 내열·내압성관을 말한다) 또는 수위측정장치 2. 유량계 3. 온도계 <p>②온천원이 같은 다른 온천공에 설치된 수문관측시설을 통해 수위등의 측정이 가능하다</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제15조(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① 누구든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가정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이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예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p>	<p>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 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시설의 업무용 2. 농업용수 공급용 3.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1일 양수량을 기준으로 30톤 이내로 사용하려는 경우 	<p>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1999. 2. 5., 2010. 8. 11., 2020. 6. 23.></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문관측시설은 온천공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27.></p> <p>[제7조에서 이동 <2007. 9. 18.>]</p> <p>제9조(지하수개발 허가신청)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 9. 18.></p> <p>[중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제8조에서 이동 <2007. 9. 18.>]</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16.></p>	<p>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욕용으로 허가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이용계획서 2.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현황(양수시험 결과를 포함한다)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이용허가신청자와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p>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할</p>	<p>제10조(온천의 이용허가신청)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 8. 11.></p> <p>[종전 제10조는 제10조의2로 이동, 제9조에서 이동 <2007. 9. 18.>]</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수 있는 온천의 양수량은 온천전문기관이 검사한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양으로 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법 제10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p> <p>〈개정 2017. 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우선이용권자일 것 2.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 예정지 안에 목욕장·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에 해당되는 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일 것 <p>④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온천의 일시적 이</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②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이 해당 온천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거나 온천우선이용권자와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경우 2.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p>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1일 적정 양수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p> <p>⑤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6. 23., 2021. 6.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양어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사목에 따른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3.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제조시설 4.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제조시설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대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하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예정지 안에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3. 온천수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p> <p>가.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성분기준 나. 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기준</p> <p>4. 다음 각 목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온천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p> <p>가. 온천공보호구역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나. 온천원보호지구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보고서 다.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이용하려는 온천공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p>	<p>8.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p> <p>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5. 제4호 각 목의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揚水量)을 초과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p> <p>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p> <p>④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온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p> <p>⑤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신설 2013. 7. 16.> [전문개정 2011. 5. 30.]</p>	<p>제18조(온천과 관련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 금지)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는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p> <p>제19조(허가를 위한 조사 의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3.></p>	<p>제10조의2(온천표시)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온천표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 6. 27., 2010. 8. 11.> [제10조에서 이동 <2007. 9. 18.>]</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5. 삭제 <2021. 4. 20.> <p>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온천이용을 허가할 때</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p> <p>④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 방법과 그 밖에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11조(온천의 수질기준 등)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의 수질기준과 검사방법에 대하여서는 별표 3을 적용한다. <개정 2001. 6. 27., 2007. 9. 18.></p> <p>[본조신설 2000. 6. 16.]</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제18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시장·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상·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온천종사자 또는 해당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보건상·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 온천종사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제12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특정성분의 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 8. 11.></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을 자(이하 “검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1. 6.</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禁忌症), 목욕용 또는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천이용시설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④ 시장·군수는 수질 및 성분 검사 결과 온천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하여야 하며 재검사결과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27., 2007. 9. 18., 2010. 8. 11., 2020. 6. 23.></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검사대상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검사기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6. 27., 2005. 2. 11., 2010. 8. 11., 2020. 6. 23.></p> <p>④ 법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온천에 포함된 성분의 치료효과 등 온천의 이용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 8. 1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20조(온천의 공동급수) ① 시장·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별지 제10호서식에 온천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적현황측량성 과도와 제3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8. 11., 2020. 6. 23.></p> <p>1. 온천공이 발견된 위치</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③ 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p> <p>④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5. 7. 20.></p> <p>1.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p>		<p>2. 발견경위</p> <p>3. 발견내용: 온천공의 개수, 지름과 깊이, 온도 및 1일 적정 양수량</p> <p>4. 발견지역의 여건</p> <p>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의 개발·이용의 가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16., 2001. 6. 27., 2003. 12. 30., 2007. 9. 18., 2010. 8. 11.></p> <p>1.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영 제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p> <p>2. 1일 적정 양수량이 300톤 이상일 것.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p> <p>가. 1일 적정 양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수에 따른 수위강하 범위는 48시간 동안 양수하였을 경우 기준수위로부터 1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p> <p>나. 1일 적정양수량은 단계양수시험 후 기준수위로부터의 수위강하량의 95%의 수위회복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p> <p>3.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유무</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사실과 다른 경우</p> <p>2.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3.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p> <p>4.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p> <p>5.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p> <p>[전문개정 2011. 5. 30.]</p>		<p>4.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등 공익상 피해 여부</p> <p>5. 온천 수요전망 및 주변여건</p> <p>6. 온천발견신고자가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p> <p>③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별표 5에 따라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 온천공의 붕괴 등으로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때에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늦추어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0. 8. 11., 2020. 6. 23.></p> <p>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신고수리된 신고인이 당해 온천</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공이 있는 토지 및 온천개발예정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온천개발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1999. 2. 5., 2001. 6. 27., 2007. 9. 18., 2010. 8. 11., 2020. 6. 23.></p> <p>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천원이 같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2이상의 온천발견신고가 있는 때에는 온천발견신고서의 접수순서에 따른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고 그 다음 순위이하의 자의 온천발견신고서는 이를 지체 없이 반려해야 한다. 다만,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검사결과 그 신고공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선순위자의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해 검사한 후 온천발견신고를 수리 또는 반려해야 한다. <신설 1999. 2. 5., 2003. 12. 30., 2007. 9. 18., 2010. 8. 11., 2020. 6. 23.></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온천개발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굴착허가 또는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01. 6. 27., 2007. 9. 18., 2010. 8. 11., 2020. 6. 23.></p> <p>제13조의2(온천발견신고의 반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 <개정 2003. 12. 30., 2007. 9. 18., 2010. 8. 11., 2020. 6.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발견신고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삭제 <2007. 9. 18.> 3. 온천발견신고자가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 등의 내용 및 절차 등에 위반하여 온천을 발견한 경우 <p>[본조신설 2001. 6. 27.]</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제22조(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發見申告孔)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 2.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① 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토지를 굴착하</p>		<p>제14조 삭제 <2007. 9. 18.></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용자·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①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을 조사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③ 온천자원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온천자원 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p>		<p>제15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는 적정양수량, 수위 변동상황 및 수질·성분의 변화등 온천의 특성을 대상으로 온천이용허가일부부터 5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온천원의 부존량과 부존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9. 2. 5., 2001. 6. 27., 2007. 9. 18.></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며 온천이용허가나 온천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할 수 없다.</p> <p>④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p>	<p>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 변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온천공보호구</p>	<p>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결과 온천자원의 고갈가능성이 있거나 오염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1999. 2. 5., 2010. 8. 11., 2020. 6. 23.></p> <p>③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 9. 18.></p> <p>④ 삭제 <2007. 9. 18.></p> <p>제16조 삭제 <1999. 2. 5.></p> <p>제17조(허가증의 교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7. 9. 18., 2010. 8. 11., 2020. 6. 23.></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와 그 밖에 온천수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사무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p> <p>④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11. 5. 30.]</p> <p>제25조(출입검사 등) ① 시장·군수는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에</p>	<p>역 및 온천원보호지구별로 하나 이상의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통하여 온천의 수위 변동, 온천수 이용량, 온천수의 온도 등을 상시 관측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제20조의2(온천자원 관측자료 등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기록 및 자료 등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 검사 자료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대장 <p>[본조신설 2020. 6. 23.]</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의 온도 2.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여부 3. 온천이용 허가량의 초과 사용 여부 4. 온천이용 배관시설 상태 5. 온천이용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 여부 6. 온천이용허가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7. 그 밖에 온천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 <p>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26조(온천종사자 교육) ① 온천종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p>		<p>제18조(관계공무원 출입증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 9. 18.></p> <p>제18조의2 삭제 <2010. 8. 11.></p> <p>제19조(온천종사자 교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으로 하며, 그 밖에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신고 전의 위생교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27조(온천협회의 설립 등) ①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 및 온천종사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온천협회(이</p>		<p>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전문개정 2010. 8. 11.]</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온천종사자 2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④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성립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⑤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2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제27조의2(협회의 사업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 회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온천이용시설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감독 3.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온천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조사·연구사업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위탁으로 사용되는 경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협회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절차 <p>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제28조(대도시에 관한 특례) 제5조,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3. 7. 16.> [전문개정 2011. 5. 30.]</p> <p>제29조(시정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이 법에 따른 승인·신고수리·허가를 할 때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p> <p>제30조(청문)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p>[전문개정 2011. 5. 30.]</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제31조(수수료) 제12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22조(수수료)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2021. 6.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의 굴착 허가 : 공당 6만원 2.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깊이 증가 허가: 공당 3만원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 허가 : 개소당 3만원 4. 동력장치의 변경허가 : 개소당 1만5천원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 건당 10만원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2.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3. 삭제 <2021. 4. 20.> 4. 삭제 <2021. 4. 20.> 	<p>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2. 13.></p> <p>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3.></p> <p>제23조(규제의 재검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9.,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에 따른 굴착허가: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 허가: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2014년 	<p>제20조(규제의 재검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7., 2014. 11. 19.,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에 따른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온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2014년 1월 1일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본조신설 2015. 7. 20.]</p> <p>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2. 4., 2011. 5. 30., 2013. 7. 16., 2014. 10.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온천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p>1월 1일</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 12. 9., 2017. 7. 26., 2021. 3.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21. 3. 2.> <p>[본조신설 2013. 12. 30.]</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17., 2014. 11. 19.,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에 따른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8조의2에 따른 수문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등: 2015년 1월 1일 3. 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 교육시간 등: 2015년 1월 1일 <p>[본조신설 2014. 4. 4.]</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3. 제9조제3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p> <p>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4. 10.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 제16조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3.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삭제 <2010. 2. 4.></p> <p>제35조(벌칙)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p> <p>제37조(과태료)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12. 22.></p>	<p>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1. 6. 22.]</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 2020. 12.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5. 30.]</p> <p>부 칙 <제7856호, 2006. 3. 3.></p> <p>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굴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접수된 토지굴착허가나 온천발견신고에</p>	<p>부 칙 <제22320호, 2010. 8. 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온천발견</p>	<p>부 칙 <제686호, 1996. 7. 3.></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수문관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문관측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온천공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대하여는 제12조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③(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p> <p>부 칙 <제8337호, 2007. 4.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8조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⑬ 내지 ⑰생략</p> <p>부 칙 <제8343호, 2007. 4. 11.> (관광진흥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신고를 하는 온천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의 신청이 있거나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른다.</p> <p>제4조(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의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p> <p>제5조(굴착사용동의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굴착사용동의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제7조제3항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굴착사용동의서 유효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12조제5항 및 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굴착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제13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토지굴착동의서의 동의기간을 굴착허가 유효기간의 종료일</p>	<p>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③(온천발견신고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견신고된 온천에 대한 신고수리의 기준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p> <p>부 칙 <제34호, 1999. 2. 5.></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99호, 2000. 6. 16.></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온천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온천전문기관은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온천전문기관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별표 1에서 규정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관광진흥법」 제50조”를 “「관광진흥법」 제52조”로 한다.</p> <p>⑭ 내지 ⑳생략</p>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1〉까지 생략 〈21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제26조제3항</p>	<p>까지로 하여 제출할 수 있다.</p> <p>제6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본다.</p> <p>제7조(온천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온천의 일시적 이용허가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p> <p>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온천의 일시적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 대통령령 제15107호 온천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② 「온천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137호, 2001. 6. 27.〉</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②(온천전문기관의 등록기준중 전문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온천전문기관의 등록기준중 전문인력에 관하여는 이 규칙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1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212호, 2003. 12. 3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267호, 2005. 2. 11.〉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 제4항,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p> <p>제4조제4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p> <p>〈213〉부터 〈76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 칙 〈제9202호, 2008. 12. 26.〉</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0005호, 2010. 2. 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굴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굴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굴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부터 기산한다.</p>	<p>령 제20조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온천협회에 위탁한다.</p> <p>부 칙 〈제22626호, 2011. 1. 1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사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⑤부터 ③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 칙 〈제23718호, 2012. 4.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p>	<p>부 칙 〈제393호, 2007. 9. 1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12월 8일 이전에 종전의 「온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등으로 지정된 후 지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2008년12월31일까지 그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6년12월 8일 이전에 온천원보호지구 등으로 지정되고 지형도면의 고시가 완료되었으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온천원보호지구 등의 경우에는 2007년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p> <p>부 칙 〈제1호, 2008. 3. 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제3조(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에 대한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p> <p>제4조(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p> <p>부 칙 <제10732호, 2011. 5. 30.></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0892호, 2011. 7. 21.> (환경영향평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51>부터 <85>까지 생략</p> <p>제15조 생략</p> <p>부 칙 <제24425호, 2013. 3. 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온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③까지 생략</p> <p>부 칙 <제7호, 2008. 3. 24.></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부 칙 <제154호, 2010. 8. 1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성분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㉓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㉔ 및 ㉕ 생략</p> <p>제10조 생략</p> <p>부 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로 한다. <75>부터 <129>까지 생략</p> <p>부 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 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p>	<p>후 최초로 성분검사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온천발견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의 온천발견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 칙 <제1호, 2013. 3. 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p> <p>제5조제6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제3항·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4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p> <p>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185>부터 <710>까지 생략</p>	<p>치부령”으로 한다.</p> <p>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p> <p><186>부터 <418>까지 생략</p> <p>부 칙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p> <p>부 칙 <제26369호, 2015. 6. 30.> (주택도시금융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p> <p>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p> <p>⑫부터 <51>까지 생략</p> <p>부 칙 <제51호, 2014. 4. 4.>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99호, 2014. 11. 17.>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제7조 생략</p> <p>부 칙 <제11896호, 2013. 7. 1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이행보증금 예치 및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 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p> <p>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p>	<p>마.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p> <p>②부터 ③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 칙 <제27205호, 2016. 5. 31.>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p> <p>④부터 <59>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 칙 <제27858호, 2017. 2. 13.></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p> <p>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p> <p>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p> <p>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p> <p>⑰부터 ⑳까지 생략</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협의를 또는 승인 〈81〉부터 〈126〉까지 생략</p> <p>제25조 생략</p> <p>부 칙 〈제12737호, 2014. 6.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을 “지역개발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p> <p>제10조 생략</p> <p>부 칙 〈제12738호, 2014. 6.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4〉까지 생략 〈145〉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6〉부터 〈388〉까지 생략</p> <p>부 칙 〈제28521호, 2017. 12. 29.〉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91호, 2016.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5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p> <p>⑥부터 <65>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 칙 <제12797호, 2014. 10. 15.></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다만, …<생략>… 제7조의 개정규정, …<생략>…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부 칙 <제30795호, 2020. 6. 23.></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 칙 <제31516호, 2021. 3. 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31804호, 2021. 6. 22.></p>	<p>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p> <p>⑩부터 <64>까지 생략</p> <p>부 칙 <제187호, 2020. 6. 23.></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241호, 2021. 3. 11.></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274호, 2021. 9. 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282호, 2021. 10. 21.></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제2항·제3항·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94>부터 <258>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제3조(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1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기간 연장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부 칙 <제13401호, 2015. 7. 20.></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3805호, 2016. 1. 19.> (주택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p> <p>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3>부터 <86>까지 생략</p> <p>제22조 생략</p> <p>부 칙 <제14284호, 2016. 12. 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p>	<p>부 칙 <제32066호, 2021. 10. 1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온천발견신고를 한 경우의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용례) 제10조의2제3항 후단 및 제16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 칙 <제14480호, 2016. 12. 27.> (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②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p> <p>③부터 <65>까지 생략</p> <p>부 칙 <제14795호, 2017. 4.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한다. ⑦ 및 ⑧ 생략</p> <p>부 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제29조 및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p> <p>제5조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제2항·제3항·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p> <p>〈77〉부터 〈382〉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 칙 〈제17171호, 2020. 3. 31.〉 (전기안전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④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의2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㉔부터 <6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 칙 <제17697호, 2020. 12. 2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원상회복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부 칙 <제18088호, 2021. 4. 20.></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온천법 시행령 별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제6조제3항 관련)

1. 전문인력: 다음의 각 목을 모두 갖추는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賦存量)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 2) 응용지질·지구물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박사학위의 경우 5년, 석사학위의 경우 7년 또는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의 경우 10년 이상 종사(학위를 소지하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 3)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자격을 가지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1)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학위를 소지하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 2)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격을 가지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1) 화학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학위를 소지하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 2) 화학분석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격을 가지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2.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추는 것

가. 물리탐사 및 검층장비

나.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총용해물질(TDS, Total Dissolved Solids) 등의 검사를 위한 간이수질측정장비(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한정한다)

다. 수위측정장비

라. 수량측정장비

마. 야외수질분석장비

[별표 1의2] <신설 2021. 10. 19.>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6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과징금은 영업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다. 나목의 영업정지 기간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으로 한다)으로 한다.
- 라. 1일당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 마. 연간 매출액(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전체 연간 매출액으로 한다)은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사업이나 휴업 등에 따라 1년간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 산정기준

등급	연간 매출액(단위: 원)	1일당 과징금(단위: 원)
가	5억원 이하	10만원
나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다	10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20만원
라	1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25만원
마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30만원
바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40만원
사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0만원
아	50억원 초과 ~ 60억원 이하	60만원
자	6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70만원
차	70억원 초과 ~ 80억원 이하	80만원
카	80억원 초과 ~ 90억원 이하	90만원
타	9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100만원
파	100억원 초과	110만원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거듭하여 줄여 부과할 수 없다)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	500		
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1호	20	40	60
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2호	150		
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3호	60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삭제 <2007.9.18>

[별표 1의2] <개정 2021. 10. 21.>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제4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사업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 등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제7조제4항 제1호	등록취소	
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법제7조제4항 제2호	등록취소	
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제7조제4항 제3호	등록취소	등록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법제7조제4항 제4호	영업정지 6월	
마.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법제7조제4항 제4호	등록취소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제7조제4항 제5호	영업정지 6월	
사.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제7조제4항 제6호	등록취소	등록취소

[별표 1의3] <개정 2007.9.18>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제6조 관련)

온천개발면적(제곱미터)=66.2×일일적정양수량(톤)

비 고

1. 삭제(2003.12.30)
2. 온천개발지역의 토지가 온천개발자의 소유일 경우 10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개발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8.3.24>

온천표시(제10조의2 관련)



비 고

1. 온천표시: 짙은 파란색 (Pantone 293 C), 파란색(Cyan 100%)
2. 글씨: 파란색(Cyan 100%)

※ 이 표시판의 규격은 현장사정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습니다.

온천표시 및 글씨는 유사한 계통의 색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씨는 온천, 溫泉, HOT SPRING으로 단독 또는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온천이용허가업소 외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표 3] <개정 2021. 9. 7.>

온천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제11조관련)

1. 목욕물의 수질기준

가. 원수: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총대장균군은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욕조수(浴槽水)

- 1)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총대장균군은 1ml 중에서 1개를 초과해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 2)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키고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균총형성단위, colony forming unit)/L를 초과해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유리잔류염소(遊離殘留鹽素) 농도는 0.2mg/L이상 0.4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 3)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키고 염소소독 외의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L를 초과해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2. 수질검사방법

가. 원수의 총대장균군 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르고 욕조수의 총대장균군 검사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총대장균군 시험방법 중 평판집락시험방법에 따른다.

나. 욕조수의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는 경우에 채수방법은 욕조의 대각

선(욕조에 대각선이 없는 경우에는 욕조의 양쪽 끝간의 거리가 가장 긴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목욕물을 3등분하여 물의 표면에서 같은 양의 목욕물을 채수하되, 균일하게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사용한다.

다. 총대장균군 시험용 시료는 멸균된 100ml 이상의 용기를 이용하여 무균적으로 채취하고 한번 채취된 시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온(10℃이하)의 상태로 6시간 이내에 검사실로 운반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은 시료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분석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1개의 용기에 욕조수의 레지오넬라균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1L 이상 채취하고 봉인해 검사 기관으로 수송해야 한다.

마. 욕조수의 레지오넬라균 검사방법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표준화된 검사방법에 따른다.

바.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농도 검사는 적합한 검사 도구를 이용해 그 사용방법에 알맞은 방법으로 검사한다.

[별표 4] <개정 2020. 6. 23.>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검사주기 및 검사항목
(제12조제1항관련)

구분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
수질 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행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연 1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 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체에의 유해여부 (음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음용적합여부를 포함한다)
성분 검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5년마다 1회, 다만, 유황성분(total S-2 성분함량), 유리탄산(free CO ₂) 성분의 경우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 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성분 2. 온도 3. 이용에 따른 효과 4. 이용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별표 5] <개정 2010.8.11>

온천공검사방법 및 검사보고서 작성항목(제13조제3항관련)

1. 온천공 검사방법
 - 가. 물리검층, 온도검층
 - 나. 단계양수시험
 - 다. 장기양수시험(48시간)
 - 라. 성분검사

2. 온천공검사보고서 작성항목
 - 가. 개요(위치 및 검사범위 등)
 - 나. 지형 및 지질
 - 다. 검사공 현황 및 수위변화
 - 라. 물리검층과 온도검층
 - 마. 단계양수시험
 - 바. 장기양수시험
 - 사. 양수시험시 수온·간이수질 변화
 - 아. 성분분석 및 해석
 - 자. 종합결과(용출온도, 1일 적정 양수량, 성분 등)
 - 차. 시험성적서 등 관련자료 첨부

온천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대장

등록번호		등록 년월일		사업개시 년 월 일		근거법령	
상호 (명칭) 및 사업장 소재지				법인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보유인력				보유장비			
변동사항	상호,명칭 (신청일)	법인번호 (신청일)	사업장 소재지 (신청일)	대표자명 (신청일)	생년월일 (신고일)		
	보유 인력				보유 장비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17. 7. 26.>

제 호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증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주소:
4. 영업소 소재지:
5. 영업의 종류:
6. 등록조건:

「온천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과징금영수필통지서
(행정안전부장관 보관용)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①발행번호	
② 납 부 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③위반일자	
④위반행위	
⑤납부금액	
⑥납부기한	
⑦수납기관	
<p>「온천법」제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수납인</p> <p>행정안전부장관 [인]</p>	

①발행번호	
② 납 부 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③위반일자	
④위반행위	
⑤납부금액	
⑥납부기한	
⑦수납기관	
<p>위와 같이 납입했기에 통지함</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수납기관 (인)</p> <p style="text-align: right;">수납인</p> <p>행정안전부장관 [인]</p>	

①발행번호	
② 납 부 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③위반일자	
④위반행위	
⑤납부금액	
⑥납부기한	
⑦수납기관	
<p>위와 같이 납입했기에 영수함</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수납기관 (인)</p> <p style="text-align: right;">수납인</p> <p>행정안전부장관 [인]</p>	

[별지 제1호의7서식] <개정 2021. 10. 21.>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온천도시 지정신청서**

「온천법」 제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온천도시의 명칭:
2. 온천도시의 위치:
3. 온천도시의 면적:
4. 온천도시 지정 신청 사유:

붙임 : 「온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서류 각 1부.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0. 21.>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온천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온천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변경된 온천개발계획)과 그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승인 (변경승인) 신청내용	위 치			
	면 적			
	사유 및 기대효과			
온천 현황	용출온도	℃	성분유형	
	적정 양수량	톤/일	수위강하량	m

- 붙임 : 1. 지리적 여건
 2.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필요한 사유(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변경하려는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1. 10. 21.>

온천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상호(명칭)		법인번호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승인(변경승인)신청 내용	위치			
	면적			
사유 및 기대효과				
온천현황	용출온도	℃	성분유형	
	적정 양수량	톤/일	수위강하량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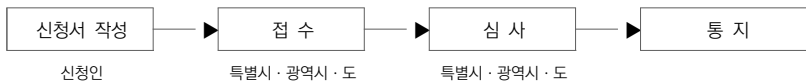
「온천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변경된 온천개발계획)과 그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귀하

붙임서류	1. 지리적 여건 2.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필요한 사유(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변경하려는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사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9. 7.>

토지굴착 등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허가번호 및 연월일	허가 제 호(년 월 일)			
굴착위치				지목
내용	깊이	구경	채수량	㎡/일
공사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시공자	대표자	상호	면허번호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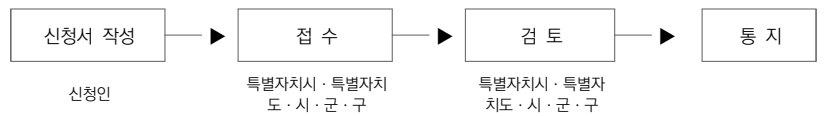
「온천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변경허가·유효기간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소유권자의 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굴착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굴착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일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용출구 확대 및 깊이 증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 대신 용출구 확대 및 깊이 증가에 관한 설계도서를 제출합니다.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수수료 1.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의 굴착허가: 공당 6만원 2.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용출구 확대 또는 깊이 증가 허가: 공당 3만원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1. 9. 7.>

온천굴착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굴착위치			지목	
내 용	깊이	구경	채수량	㎡/일
공사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시공사	대표자	상호	면허번호	
사 유				

「온천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온천굴착 신고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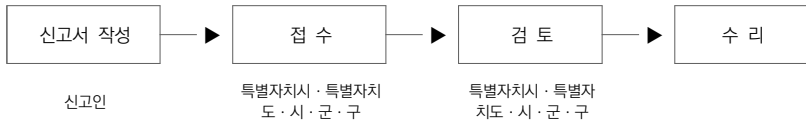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 소유권자의 온천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를 굴착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온천굴착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복구계획서 및 굴착단면도(각각 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6. 23.>

동력장치설치(변경)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허가번호 및 연월일	허가 제 호(년 월 일)			
설치장소			지목	
설치 또는 변경내용	마력	용출량	㎡/일	
설치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사 유				

「온천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동력장치설치(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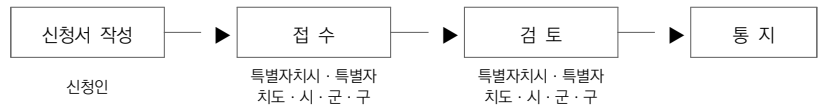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력장치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	수수료 설치 : 개소당 3만원 변경 : 개소당 1만5천원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9. 7.>

지하수 개발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개발내용	위치			
	면적(㎡)			
개발시설 설치내용	깊이(m)	지름 (mm)	채수계획량(㎡/일)	
개발기간	사용용도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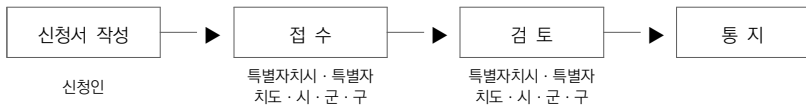
「온천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지하수개발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1:1,200)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6. 23.>

온천이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급수자	성명			
	주소			
목적	이용량		㎡/일	
이용기간	이용개시일자	년	월	일
이용업소명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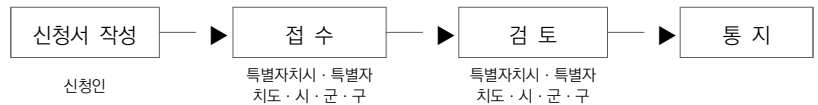
「온천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온천의 이용계획서 2.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현황(양수시험결과를 포함합니다)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이용 허가신청인과 온천공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건당: 10 만원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7] 삭제 <1999.2.5.>

[서식 8] 삭제 <1999.2.5.>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6. 23.>

수질(성분)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토지굴착 허가번호	허가 제 호	허가연월일	년	월 일
온천공 위치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제 호 공
이용 업소명		소재지		
이용 허가번호	허가 제 호	연월일	년	월 일

수질(성분) 검사연도

「온천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온천의 수질(성분)검사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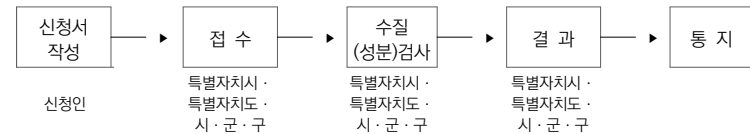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23.>

제 호

허 가 증

1. 성 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2. 주 소:

3. 위 치:

4. 허가종별:

5. 허가내용:

6. 허가기간:

7. 허가조건:

「온천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6. 23.>

(앞 쪽)

제 호

온천출입검사원증

(유효기간:)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
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55mm×85mm[보존용지(1종)120g/㎡]

(색상 : 하늘색)

(뒤 쪽)

온천출입검사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온천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온천
이용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온천수의 온도 · 성분 · 유출량 및 이용상황 등을 검사할 때에는 이 검사 원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제14호 서식] 삭제 (2010.8.11.)

[별지 제15호 서식] 삭제 (2010.8.11.)

[별지 제16호 서식] 삭제 (2010.8.11.)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양온천의 지정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온도·성분 및 주변 환경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중에서 전국 또는 광역적인 수요·공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 사업계획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대한 기여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온천이용시설을 보양온천으로 지정한다.

②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보양온천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양온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신청한 온천에 대하여 지정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대하여 보양온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의 소규모 온천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보양온천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리적·경제적 여건, 수요전망 및 기대효과

3. 온천수의 특징, 개발·이용계획 및 보전·관리계획(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포함)
4. 토지 이용계획, 기반시설 정비계획, 환경 정비계획 및 관리운영 계획
5. 주변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 개발·활용계획
6. 사업의 시행주체, 시행방법 및 재원조달방법
7.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
8. 건강체험 프로그램 등 보양온천 운영방안
9. 그 밖에 행정적 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보양온천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행정착오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보양온천 지정을 승인하면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통보받은 때에는 보양온천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보양온천 지정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양온천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주체가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시작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양온천의 표시) 보양온천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보양온천에 대한 지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시설을 갖춘 국민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복지시설, 의료시설 및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2. 자금의 우선 융자·지원, 각종 조세·부담금·사용료 등의 경감
3. 보양온천에 대한 안내, 정보제공 및 국내외 홍보 등 필요한 조치

제7조(세부 운영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보양온천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부 칙 <제39호, 2008. 10.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74호, 2010. 6. 3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양온천환경의 지정조건란 중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⑨부터 ⑳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제1호, 2013. 3. 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⑰부터 <51>까지 생략

부 칙 <제56호, 2014. 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부 칙 <제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64>까지 생략

부 칙 <제274호, 2021. 9. 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 9. 7.)

보양온천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지정기준	지정조건	비고
온천수	온도	온도	용출온도 35℃ 이상		각 소항목 중 1항목 해당
	성분	총고용물	용출온도 25℃ 이상 총고용물함량 1000mg/ℓ 이상		
		유황	용출온도 25℃ 이상 총유황(H ₂ S, S ₂ O ₃ , HS-) 함량 1mg 이상		
		유리탄산	용출온도 25℃ 이상 유리탄산 250mg/ℓ 이상		
	수량	이용허가수량	1일 최대이용 인원(8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량	· 최소 210㎡/일 이상 · 운동욕장 50㎡/일 이상 · 온천욕장 160㎡/일 이상	절대조건
보양온천시설	시설	건강시설 (총연면적 1,000㎡이상)	1. 건강상담실 점 응급조치실	· 2급 이상 응급구조사 상주	절대조건
			2. 운동욕장(5가지 기능) 가. 보행욕 나. 전신샤워(Body Shower: 욕조 벽면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어깨, 허리, 종아리 등을 마사지하는 것) 다. 수압마사지(Neck Shower: 목포수처럼 떨어지는 물의 수압으로 목, 어깨 등을 마사지하는 것) 라. 욕조 안마(Floating Massage: 낮은 면의 노즐에서 분사되는 물로 다리나 허리 등을 마사지하	· 욕조바닥 면적 100㎡ 이상 · 수상인명구조요원 상주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지정기준	지정조건	비고
보양온천환경	주변환경	필수사항	는 것) 마. 수중침대(Relax Lining: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 등, 허리, 종아리, 발바닥 등을 마사지할 수 있는 침대)	· 5층 이상 운동기구 · 수면실 외 교류 장소 · 길이 25미터 이상 또는 3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바닥면적 160㎡ 이상 수상인명구조요원 상주	
			3. 운동실 4. 릴렉스 존 5. 수영장		
			1. 프론트 로비 2. 탈의실 3. 온천욕장 4. 사우나실 5. 찜질방 6. 노천탕 7. 다목적 홀 8. 식당		
			1. 숙박시설 보유 또는 근접거리(1,000미터 이내)에 이용 가능 2.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제휴관계가 있을 것		
			1. 야외공기 청정도 2. 실내공기 청정도 3. 실내 소음도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환경기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	절대조건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지정기준	지정조건	비고
				규칙」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권장사항	1. 경관이 수려 2. 녹지(공원) 등이 잘 정비 3. 주변 위생처리 상태가 양호 4. 양호한 환경보호 상태 5. 상수도시설 상태 6. 교통 및 주차장의 편리 7. 재해에 대한 안전도 8. 보도 확보 및 정비 상태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4분류하여 100% 중 60% 이상

[별표 2]

보양온천 표시(제5조 관련)



비고

1. 보양온천 표시 : 파란색(Cyan 100%)
 2. 글씨 : 흰색
- ※ 이 표시판의 규격은 현장 사정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음.
 ※ 보양온천 표시 및 글씨는 유사한 계통의 색깔을 사용할 수 있음.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 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실시기관) ① 온천종사자 교육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회에 대하여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교재, 교육비 및 회계 등의 적정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협회장은 그 시정명령 등을 지체 없이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시간) ① 온천종사자는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온천종사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벽지 등의 온천종사자로서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온천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유 및 교육대상자 인적사항을 교육예정일 10일 전까지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1항의 교육을 가급적 총회 등 온천종사자 소집이 용이한

시기에 맞추어 실시한다.

제4조(교육내용 및 방법)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온천에 관한 일반사항

가. 온천법령의 해설과 운용

나. 온천의 기준과 온천자원의 해설과 운용

다. 온천개발절차 및 관련규제 사항

라. 온천성분검사, 온천영향검사, 온천자원조사 등 온천검사에 관한 사항

마. 온천이용허가에 관한 사항

바. 온천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등

2. 온천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포함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교육

3. 온천서비스 향상 및 온천종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4. 온천행정 등 기타 온천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회는 온천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온천종사자는 교육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5조(교육교재의 편찬 등) 협회장은 제4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온천종사자의 거주지역과 업무 및 업종유형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강사)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공무원 등 온천업무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장소) 교육장소는 교육대상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피교육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제9조(수강료) ① 협회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실비수준으로 협회장이 결정한다.

③ 협회장은 수강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유예) ① 온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온천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온천종사자에 대하여 1년 범위 안에서 교육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에서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시
5. 기타 시장·군수가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온천종사자교육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연기원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의 승인) ① 협회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방법
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5.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
6. 기타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다음 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 예상인원
2. 교육장소
3. 수강료 및 산출내역
4.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
6. 과목별 교육시간
7. 기타 온천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협회장은 교육시행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와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협회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보고) ① 협회장은 교육예정일 15일전 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 온천명 및 주소
2. 교육일시 및 장소
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 통보의무 고지
5. 교육 불참시 불이익 발생 고지

② 협회장은 교육실시후 피교육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수료증 을 교부하고, 동 교육수수료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수수증 교부(교육확인)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교육 실시후 피교육자의 수수료증 교부는 사이버교육 수료자가 직접 출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협회장은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실시후 1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 참석교육) ① 온천종사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중위생관리 책임자지정 확인서를 협회에 제출한 후 온천종사자 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이수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지원) ① 시장·군수는 신규 온천이용허가를 받거나 온천이 용허가자의 지위승계신고 및 이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동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에서 온천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협회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① 협회장은 매 교육이 종료될 때마다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교육참석 및 불참현황을 사이 버교육결과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온천종사자가 교육 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협회장이 시장·군수에게 불참자로 통보하였을 경우 시장·군수 는 통보받을 때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온천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처리) ① 협회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한다.

② 교육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재검토키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0-71호, 2010. 10. 29.〉

-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교육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온천사업자는 이 지침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2014-1호, 2014. 11.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2호, 2016. 3.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호, 2017. 7.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37호, 2018. 5.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천종사자교육 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사이버교육 수료자는 온천종사자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1-22호, 2021. 3. 5.〉

제1조(시행일) 이 행정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